

朝鮮의 科擧와 文字生活

沈慶昊 | 高麗大 漢文學科 名譽教授 / sim1223@korea.ac.kr

-
1. 序言
 2. 朝鮮科試의 科目과 應擧文體
 3. 應擧文 鍊磨에 따른 思惟樣式과 詩文素養의 형성
 - 1) 書院의 居接과 做科業
 - 2) 思惟樣式의 規範化
 - 3) 詩文素養의 共有
 4. 記敍規範 形成과 書籍編纂
 - 1) 記敍規範 形成
 - 2) 韻書體系의 踏襲과 『千字文』의 圈發標記
 - 3) 受驗用 書籍의 輸入, 編纂, 流通
 5. 結語
-

【국문초록】

한국의 근대 이전의 ‘문’과 ‘학’은 정치권력과 화해하여 그것을 추동하거나 혹은 정치권력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방법과 내용을 모색해 왔다. 정치권력과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문학의 독자성을 운위하는 것은 실상에 맞지 않는다. 종래 정치권력의 구현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인재 선발의 방식인 과거와 인력 관리의 방식인 考課·署經이었다. 이에 문과 학의 발전 양상과 정치권력의 유지 방식을 살피기 위해서는 과거 제도의 본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서 부과된 문체나 제목은 당시 국가가 인재에게 요구하는 이념과 논리가 담겨 있다.

고려와 조선의 왕조는 鄉試·漢城試·小科·大科(文科) 등의 科試를 人選·入仕의 淸경으로 공인함으로써, 應擧文을 習熟한 독서층을 양산했다. 따라서 科

試의 應舉文體는 한 시기의 문풍과 학술을 규정하고 제한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일부 應舉文體는 중앙 정부에서 소용되는 문체이기도 했지만, 일부 應舉文體는 시험을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따라서 應舉文體는 시문의 발달에 부정적인 효과를 낳은 면도 있다. 본고는 조선 科試의 科目과 應舉文體, 應舉文 연마에 따른 사유양식과 시문 소양의 형성, 記敍 규범과 서적 편찬 등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조선의 과거와 문자생활의 전반에 대해 개관하고자 한다.

[주제어] 科擧, 應舉文體, 문과 학, 정치권력, 사유양식, 문자생활, 記敍규범, 서적출판

1. 序言

한국의 근대 이전의 ‘문’과 ‘학’은 정치권력과 화해하여 그것을 추동하거나 혹은 정치권력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방법과 내용을 모색해 왔다.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문학의 독자성을 운위하는 것은 실상에 맞지 않는다. 종래 정치권력의 구현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인재 선발의 방식인 科擧와 인력 관리의 방식인 考課·署經이었다. 이에 문과 학의 발전 양상과 정치권력의 유지 방식을 살피기 위해서는 과거 제도의 본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서 부과된 문체나 제목은 당시 국가가 인재에게 요구하는 이념과 논리가 담겨 있다.

栗谷 李珣(1536~1584)는 19세의 나이에 과거에 응시하려고 하면서, 군주를 성군으로 만들려는 이념을 실현하고 동시에 門戶의 計策을 세우기 위해서 과거에 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1554년 牛溪 成渾(1535~1598)은 그 두 길이 모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李珣는 과거를 통해 벼슬에 나가는 것이 孝養의 방편이라고 적극 옹호했다.¹⁾ 그러나 과거는 ‘貪躁熱中, 以喪其志’의 우려가 있었으므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었

다.²⁾ 李珥는 “科擧之害, 如門內之寇. 異端之害, 如門外之寇.”라고 과거의 폐해를 비판했다.³⁾ 厚齋 金榦(1646~1732)은 당시 사람들이 “冒沒廉恥, 不計死生而趨之.”하는 상황을 개탄했다.⁴⁾ 과거는 중인이나 서얼도 응시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인재 등용의 문호를 개방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중인이나 서얼은 과거 응시의 顯達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應試를 포기하는 예가 많았다. 그렇기는 해도 중인이나 서얼 가운데 과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예가 적지 않았다. 서얼 문인 李德懋(1741~1793)는 같은 서얼 문인 朴齊家(1750~1815)에게 보낸 서찰에서, 부모 봉양을 위해 부득이 과거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⁵⁾ 成大中(1732~1812)은 조선에서는 양반만큼 이 점을 누리는 것이 없으므로 양반이 될 수만 있다면 패가망신도 각오했으

- 1) 成渾, 『與李叔獻』, 『牛溪集』續集 卷3 簡牘, 韓國文集叢刊 43, 民族文化推進黨, 1989. “科擧, 近世之通道也. 賢人君子皆就而擧之, 得官行道, 不可則止. 初非有吾君不能, 當世不可爲之心, 然古人不以科擧爲重, 足下必以科擧爲重, 輕重之間, 相去遠矣.”; 李珥, 『答成浩原渾』(甲寅), 『栗谷全書』I 卷9, 韓國文集叢刊 44, 民族文化推進黨, 1989. “足下所謂: ‘以科擧爲重, 規規於得失者’, 僕安得辭其責耶? 此亦僕之所不得已者也. 僕世無產業, 窮不能家, 老親在堂, 甘旨常闕, 爲人子者能不動心哉? 備作商賈, 如可爲也, 吾不羞賤. 但國俗有定, 士庶異業, 固不可抑而行之也. 猶有科擧一路, 可得養老之資, 故爲親屈耳, 非敢以干祿爲貧, 爲孔孟之正脈也. 父母之命, 苟不至於不義, 則皆可勉從, 僕其可不應擧乎? 既有所事, 則不可全不用力, 故時做科文, 求合於程, 度此皆不得已耳, 非敢以此爲生平事業也.”
- 2) 李珥, 『處世章第十』, 『擊蒙要訣』, 『栗谷全書』II 卷27, 韓國文集叢刊 45, 民族文化推進黨, 1989. “第今爲士者, 多爲父母之望, 門戶之計, 不免做科業, 亦當利其器, 俟其時, 得失付之天命, 不可貪躁熱中, 以喪其志也.”
- 3) 金榦, 『隨錄』, 『厚齋先生集』I, 卷39 雜著, 韓國文集叢刊 155, 民族文化推進黨, 1995. “愚嘗聞之師曰: 近來科擧之害, 甚於異端. 其言懇惻激切, 使聞者不覺惕勵愧懼. 又曰科擧之害, 如門內之寇, 異端之害, 如門外之寇.”
- 4) 金榦, 『南溪先生語錄』, 『厚齋先生集』II, 別集 卷4, 韓國文集叢刊 156, 民族文化推進黨, 1995. “先生曰: ‘科第之人, 有無限大利于身, 故冒沒廉恥, 不計死生而趨之. 此實無可以打破道理.’”
- 5) 李德懋, 『與朴在先(齊家)書』, 『雅亭遺稿』卷7, 『靑莊館全書』, 韓國文集叢刊 258, 民族文化推進黨, 2000. “吾輩不能盡力南畝, 亦不能刀錐於市門, 坐見老親之飢, 不得已屈首於此事, 亦常理也. 慎勿憾憾也.”

로 과거로 인해 꽤가망신한 자가 많았다고 했다.⁶⁾ 즉 양반의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決科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조선에서 과거는 得官顯達을 보증해주지는 않았다. 양반이 아닌 신분의 인물이 과거에 합격한 사례가 있으나, 그들은 신분 상승에 제약이 있었다. 과거제도가 양반과 비양반의 신분 차별이라는 갈등을 완화시켜 주는 기능을 하기는 했지만, 그 정도는 미미했다.⁷⁾ 하지만 16세기를 전후하여 科擧는 관직 진출을 위한 거의 유일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생계를 위한 방편, 양반으로서의 신분 유지, 應試 및 及第에 따른 이익 기대 등의 이유로 과거 응시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18~19세기에는 총체적 부정이 만연하게 되어 과거는 인재 선발의 기능이 퇴색했다.⁸⁾

한국의 과거제도는 고려 光宗 9년(958), 後周에서 귀화한 雙冀의 건의에 의하여 시행되었다고 전한다.⁹⁾ 과거는 고려 중엽 이후 조선 말까지 시행되었다. 1894년에 이르러 조선은 과거제도를 폐지했다. 1897년 10월 12일에

6) 成大中, 『醒言』, 『青城雜記』 卷4, 李丙燾舊藏 筆寫本. “我國之利, 無如兩班. 故苟可爲, 則破家亡身, 亦不自惜, 故以科敗者衆矣. 然人不畏其敗, 而逾益趨之, 以其有大利故也.”

7) 조선시대 울산·연양 지역 과거 합격자의 과목별·가문별·신분별 배출 양상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함양·안의 지역 및 옥구·임피 지역의 그것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여섯 지역에서 양반 미만의 신분이 과거에 합격한 사실이 있지만 그 수는 양반의 그것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울산·연양 과거합격자들의 前歷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관직자들이 아니라 進士·幼學 등의 합격 비율이 높아졌다. 생원 진사시 합격자들의 경우 단지 1명을 제외하고(1명은 미기), 나머지 25명의 前歷이 모두 幼學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점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하게 있었던 현상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김두현(2016), 1~53면.

8) 응시자들은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기보다 運命的 思惟와 僥倖心에 기대는 경향이 나타났다. 任完嫻(2014), 183~228면.

9) 『高麗史』 卷2 光宗世家 2年. “九年夏五月, 始置科擧, 命翰林學士雙冀取進士. 丙申, 御威鳳樓放枋, 賜崔暹等及第.”; 『高麗史』 卷73 志27 選舉一 科目一. “光宗九年五月, 雙冀獻議, 始設科擧. 試以詩賦頌及時務策取進士, 兼取明經醫卜等業. 十一年, 只試詩賦頌. 十五年, 復試以詩賦頌及時務策.”

는 황제 즉위식이 거행되고, 朝鮮은 大韓帝國이 되었다. 그 사이 고려와 조선의 왕조는 鄉試·漢城試·小科·大科(文科) 등의 科試를 人選·入仕의 捷徑으로 공인함으로써, 應擧文을 習熟한 독서층을 양산했다. 應擧文體는 及第한 年少文臣들을 대상으로 하는 重試, 弘文館員을 대상으로 하는 月課, 정조 연간 규장각 초계문신을 대상으로 하는 講製에도 응용되었다. 또한 御命에 따른 應製의 문체 및 제목도 科試와 일정한 관련을 맺었다. 심지어 圖畫院 取才에 부과된 畫題도 科試題와 연관이 깊었다. 科試의 應擧文體는 한 시기의 문풍과 학술을 규정하고 제한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일부 應擧文體는 중앙 정부에서 사용되는 문체이기도 했지만, 일부 應擧文體는 試驗을 위한 手段이기도 했다. 따라서 應擧文體는 시문의 발달에 부정적인 효과를 낳은 면도 있다.

2. 朝鮮科試의 科目과 應擧文體

고려시대 과거는 禮部試라고도 불렀으며, 그 종류는 製述業·明經業·雜科로 대별되었다. 제4대 광종 9년(958)부터 18대 의종 24년(1170)까지 과거제도가 정착되고, 무신집권 시대인 19대 명종 1년(1171)에서 24대 원종 15년(1274)까지는 파행 운영되었으며, 25대 충렬왕 1년(1275)부터 34대 공양왕 4년(1392)까지는 과거제도가 완비되었다. 顯宗 원년(1010)에는 時務策을 과목에서 제외시켰다.¹⁰⁾ 덕종 즉위년(1031)에는 製述業 監試인 國子監試를 처음 실시했다. 국가감시는 주로 詩와 賦를 고시하는 進士試였으며, 甲科로 불릴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충선왕 때 일시 폐지되었다

10) 『高麗史』卷73 志27 選舉一 科目一. “顯宗元年四月, 國子司業孫夢周奏: 只試詩賦, 不試時務策.”

가 충숙왕 7년에 부활되면서 舉子試라는 명칭으로 되었다.¹¹⁾ 시험장소는 국자감, 시험과목은 製述과 明經이며, 응시신분은 良人에 한정하되 그 중에서도 상층 향리의 자손이나 문무관 자제 이상의 신분에만 부여되었다. 응시 자격은 界首官試에서 선발된 향공과 중앙의 국자감생, 사학 12도생이며, 합격자는 進士라 하여 入仕身分으로 우대했다.¹²⁾

禮部試는 처음에 단일 시험이었으나, 현종 15년(1024) 예비시험에 해당하는 鄉貢試를 실시했다.¹³⁾ 恭愍王 18년(1369)에는 원나라 제도를 참조하여 鄉試·會試·殿試의 세 단계를 設行하고, 초장에는 經書, 중장에는 詩·賦, 종장에는 對策 등을 시험보였다.¹⁴⁾ 예부시의 응시 자격이 들어있기 때문에(실은 留守官試와 界首官試 등 별도의 길도 있지만) 국자감에 입학해 있다가 예부시에 응시하기도 하고, 국자감시험 합격하고 벼슬 살다가 예부시에 응시하기도 하며, 벼슬 살다가 국자감시에 다시 응하여 국자감에 속하기도 하는 등, 여러 길이 가능했다. 국자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國子監試(와 陞補試 및 諸業取才試)를 치러야 했다. 국자감시의 과목은 시대에 따라 달랐다. 덕종 원년 처음 설치했을 때는 賦와 六韻·十韻詩를

11) 國子監試는 進士科·監試·南省試·省試·南宮試·司馬試 등으로도 불리고, 출제내용에 따라 百字科·詞賦試·詩賦試 등으로도 불리었다. 지방의 鄉貢을 시험하여 鄉貢進士라고 했다.

12) 『高麗史』卷73 選舉1 科目1. “(睿宗五年)九月判. 製述明經諸業新學者, 屬國子監三年. 仕滿三百日者, 各業監試, 許赴.”; 『高麗史』卷73 選舉1 科目1. “(靖宗二年七月判. 生徒入學滿三年方許赴監試.” 國子監生이 최소 3년간 國子監에 소속되어 있어야 東堂監試인 禮部試에 응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된다.

13) 『高麗史』卷73 志27 選舉一 科目一. “十五年十二月判: 諸州縣千丁以上, 歲貢三人, 五百丁以上二人, 以下一人. 令界首官試, 選製述業, 則試以五言六韻詩一首, 明經則試五經各一机. 依例送京國子監, 更試, 入格者許赴舉. 餘並任還本處學習. 如界首官貢非其人, 國子監考覈科罪.”

14) 『高麗史』卷73 志27 選舉一 科目一. “十八年, 始用元朝鄉試會試殿試之制, 定爲常式.” ; 許興植(1981).

부과하고, 文宗 25년에는 六韻·十韻詩만 부과했으나, 毅宗 2년에는 賦와 十韻詩를 부과했다. 이외는 별도로 毅宗 元年에는 陞補試를 설치하여, 詩·賦·經義로 시험했다. 忠穆王 즉위년(병신, 1344)에는 賦의 형식을 律賦가 아니라 古賦로 바꾸었다.¹⁵⁾

한편 조선왕조에 들어와서 과거는 譯科와 雜科를 논외로 한다면 小科(司馬科=監試), 大科(文科=東堂試), 重科의 셋으로 나뉜다.¹⁶⁾ 조선 개국 이후 거의 100년에 가까운 논란 끝에, 식년 문과 초시는 四書疑·五經義 중 1편과 論 1편의 제출, 복시는 사서·삼경(사서와 오경 중 삼경)에 대한 講書로 정착되고, 保單子 규정으로 응시 적격자를 엄밀하게 구분했으며, 隔帳法·抽姓法·封彌易書法 등 규칙을 법제화하는 동시에 學禮講(생원·진사시 복시에 앞선 『소학』·『가례』 고강)과 典禮講(문과 복시에 앞선 『경국대전』·『가례』 고강) 이외에 照訖講(생원진사시 초시에 앞선 『소학』 고강)을 추가로 실시하게 되었다. 조홀강 제도는 과거제도에 덕성 함양의 이상을 접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또한 학교에 적을 두어야만 과거에 응시할 수 있다는

15) 『高麗史』卷73 志27 選舉一 科目一. “忠穆王即位之年八月, 改定. 初場試六經義四書疑, 中場古賦, 終場策問.”; 『增補文獻備考』卷184 選舉考一. “忠穆王即位, 改定. 初場試六經義四書疑, 中場古賦, 終場策問.”; 姜碩中, 『韓國 科擧의 展開樣相 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9.

16) 소과 가운데 進士科(監試初場)는 고려 말 1376년(禡王 2년)에 洪仲瑄의 제창으로 詩賦가 고시과목으로 정해졌고, 조선 太祖 연간에 일시 폐지되었다가 定宗 연간에 부활되어 1438년(세종 20) 式年試에서는 生進兩頭場이 설치되었다. 이후 진사과는 일시 폐지되었다가 1453년(단종 원년) 부활되고 1894년의 갑오경장에 이르기까지 존속했다. 생원·진사시는 조선시대 통틀어 모두 229회(그 중 67회가 증광별시)가 있었다. 총인원은 생원 2만 4221인, 진사 2만 3776인을 합쳐 모두 4만 7997인이었다. 문과 합격자는 『국조문과방목』에 따르면 1392년 이래 502년간 739회에 걸쳐 14,720명을 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 802회에 14,991명의 합격자를 뽑았다는 설도 있다. 식년시에 뽑은 인원이 156회에 6,032명, 각종 별시(증광별시, 정시, 춘당대시, 알성시 등 임시특설 시험)가 583회에 8,688명이다.

17) 김경용(2010), 1~26면.

원칙을 세워, 학교제도의 정비를 유도했다. 명종 조에는 『科擧事目』(1551년 7월부터 1553년 3월까지 작성된 다섯 개의 과거 관련 규정)과 『詳定科擧規式』(1553년 6월 26일 마련된 과거제도에 대한 규정과 이후 의정부 및 육조의 판서와 堂上 등이 함께 의논하여 첨부한 각 조항에 대한 동년 8월 2일의 보완 설명)을 묶어 1553년에 『科擧事目』을 인쇄·반포했다.¹⁸⁾

진사과의 과목은 賦 1편과 古詩·銘·箴 가운데 1편이었다. 뒤에는 30구 이상의 賦 1편과 30구 이상의 시 1편으로 바뀌었다. 생원시는 四書疑 1편과 五經疑 1편(뒤에 『춘추』가 제외되고 四書疑·四經疑 가운데 1편으로 바뀜)을 고시과목으로 했는데, 진사시보다 경시되었다.

1406년(태종 6)에는 堂下官 이하를 대상으로 10년에 1회, 表와 策을 시험하는 重試가 설치되고, 1407년에는 時職·散職·3품 이하 문신을 대상으로 詩·表를 시험하는 春秋仲月試가 설치되었다. 1417년(태종 17)에는 議政府에서 館閣兩府 이상의 문관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律詩·古詩·表·箴을 시험했다. 이후 重試와 春秋仲月試가 필요에 따라 개설되었다.

參考：朝鮮의 小科와 文科(大科)

＝小科(司馬試)

生員試 ① 初試 - 四書疑 1篇, 五經義 1篇

【正祖 때는 『春秋』를 빼고 4經만 시험】

Υ 『小學』·『朱子家禮』講

② 覆試(初試와 同一)

- 四書疑 1篇, 五經義 1篇

【正祖 때는 『春秋』를 빼고 4經만 시험】

進士試 ① 初試 - 賦 1篇, 詩·銘·箴 中 1篇(銘·箴은 거의 출제 없음)

【→ 賦와 詩에서 擇一】

18) 李東歡(1993), 143~145면; 金敬용(2012), 149~174면.

Υ『小學』·『朱子家禮』講

⑥ 覆試(初試와 同一)

- 賦 1篇, 詩·銘·箴 中 1篇(銘·箴은 거의 출제 없음)

【→ 賦와 詩에서 擇一】

≡文科(式年試 33人 選拔, 別試 17人以上 選拔)

㉠ 初試(式年試 全國總 240名選拔) [館試·鄉試·漢城試]

初場 - 四書疑·五經義·論 가운데 2篇

【→ 四書疑·五經義 1篇, 論 1篇】

中場 - 賦·頌·銘·箴·記 中 1篇과 表·箋 中 1篇

【→ 賦 1篇과 表·箋 中 1篇】

終場 - 策 1篇

㉡ 覆試[會試](式年試 33人 選拔)

照訖講：『經國大典』·『朱子家禮』講. 粗以上 帖文 授與, 錄名.

【講經試：四書三經의 各 1大文, 卽 全體 7大文 背誦講經】

初場 - 賦·頌·銘·箴·記 中 1篇과 表·箋 中 1篇

【→ 賦 1篇과 表·箋 中 1篇】

中場 - 策 1篇

㉢ 殿試

- 조선전기 對策·表·箋·箴·頌·制·詔 中 1篇(『經國大典』規定)

- 조선후기 對策·表·箋·箴·頌·制·詔·論·賦·銘 10科 中 1篇(『續大典』規定)

- 실질적으로는 對策을 부과

鄭範朝는 應擧文의 格式을 다음과 같이 나열했다.

疑, 論孟庸學四書中, 摘其可疑者爲問題, 下其疑而對之, 約三十行.

義, 易書詩禮四經中, 摘一句爲題, 敷衍其義, 文體如支那近世八股文, 約三十行.

詩, 古詩文中, 摘一句爲題押, 題中一字爲韻, 押其字於第四聯, 十八韻無轉韻. 例如題曰天命之謂性, 押天字, 第四韻押天, 餘十七韻, 皆用先韻. 平仄律倣李白詩[「襄陽歌」: 필자 주]「千金駿馬換少妾, 笑坐雕鞍歌落梅」音節.

賦, 命題與詩同, 但無押韻. 作者隨意轉韻, 必滿三十韻.

表, 題有賀進請謝辭乞六體. 例如「周群臣賀其命維新」, 「漢諸葛亮進出師

表’, ‘陶唐華封人請祝聖人壽富多男子’, ‘宋蘇軾謝命撤金蓮燭歸院’, ‘殷傅說辭爰立作相’, ‘唐柳宗元乞以柳州易播州’. 製法純用四六長短並十八九聯.

策, 或以古事或以時務爲問題. 其對有虛頭中頭逐條說弊掾弊篇終之次序, 務過三千字.

論, 與古文論體同.

箴銘頌等, 只出於御題, 皆用四字, 或並引. (近俗引必以四六)

李瀾은 『星湖僊說』에서 “우리나라에서 선비를 시험할 때는 經義·疑問, 詩·賦·論·策과 함께, 四六으로는 表·詔·制, 四字로는 箴·銘·頌 등 모두 12과가 있다.”라고 말했다.¹⁹⁾ 그런데 進士科·文科(大科)와 春秋仲月試의 科目은 주로 詩·賦·策·表·箴이었다. 進士科에서는 詩賦가 중시되고, 文科·重試·春秋仲月試에서는 表·箴이 중시되었다.

- ① 進士科 : 賦 1편과 古詩·銘·箴 가운데 1편(후대에는 13구 이상의 시와 30구 이상의 부)
- ② 文科 初試 中場과 覆試 中場 : 賦·頌·銘·箴·記 가운데 1편과 表·箴 가운데 1편(후대에는 賦 1편과 表·箴 가운데 1편)
- ③ 文科 殿試 : 表·策·箴·頌·制·詔·論·賦·銘의 10과 가운데 1題 (단종 원년에는 古賦 1편과 古詩·律詩 가운데 1편. 『經國大典』에서는 賦 1편과 古詩·銘·箴 가운데 1편. 『續大典』에서는 詩 1편과 賦 1편).
- ④ 重試 : 表·箴
- ⑤ 春秋仲月試 : 律詩·古詩·表·箴

19) 驪江出版社 1987년 영인 『星湖全書』 收錄 『星湖僊說』 권8 人事門 ‘律賦’

司馬試 가운데 生員試에 부과된 四書疑 試文은, 각종 문집 및 시권에 300여 편이 확인되고, 과문집 가운데 『臨軒功令』에는 순조-고종대의 200여 편 이상 수록되어 있다.²⁰⁾ 사서의 시험은 정조 대부터 간행된 시제집과 과문집의 편찬이 많아지고 순조대 이후 중복 출제 문제가 급격히 증가했다. 답안의 경우 요약과 구성 방식이 동일한 유사 답안, 轉寫가 의심되는 답안이 다수 존재한다. 모범 답안집을 학습하고 同接의 답안을 베낀 결과일 것이다.²¹⁾

司馬試 가운데 進士試에 부과된 科詩는 고려말과 조선초에는 排律十韻詩나 ‘古詩’를 부과했다. 배율십운시는 줄여서 ‘십운시’ 혹은 ‘百字科’라고 하며, 본래 오언배율이다.²²⁾ 詩題에서 平聲字 하나를 택하여 一韻到底했고, 제1·2연에서 題意를 說破하고 直言·反言·景句·引證方今의 격식을 지켜야 했다. 조선 전기의 과시는 歌行體 詠史古詩였다. 하지만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功令詩[科試/科體詩/行詩/東詩]는 2句1聯의 3聯이 1段을 이루어 모두 18聯6段으로 정착되었다. 詩題 가운데 한 글자를 운자로 삼아 第4聯(鋪頭)에 그 글자를 압운자로 사용하면서, 7言 18韻[一韻到底]으로 지었다.²³⁾ 압운은 평성, 상성, 거성의 어떤 韻이든 사용할 수 있으나 입성은 사용하지 않았다.²⁴⁾ 입제, 느낌, 회제를 제외한 첫구, 포두, 첫목, 두목, 세목, 네목, 결련과 받침은 平平仄仄仄平平-仄仄平平平仄平(韻)으로 짜고, 입제,

20) 윤선영(2018), 245~278면.

21) 윤선영(2019), 395~444면.

22) 十韻詩는 고려 國子監試에서 부과되었다. 李穡, 『十韻詩序』, 『牧隱集』 文藁 卷8. “百字科, 未知所從起也. 我國家興文治, 教養多方, 引之以簡易之術, 動之以繁華之寵, 所以擊蒙而俾之求益也. …自念辛巳科, 予年十四, 亦由是科, 得爲松亭門生, 平生雖無可稱, 然比之六韻八脚, 亦不天地懸隔矣. 其於國家設科取土之意, 又不至於大戾矣.”

23) 장유승(2013), 5~45면.

24) 俞漢雋, 『送成近序』, 『自著』續集 冊一 雜錄, 韓國文集叢刊 249, 民族文化推進會, 2000. “行詩非古也. 其始也原於歌行而自爲一法, 平仄高低有定位, 鋪項回入有恆式. 其法無所用, 用之鄉漢城進士之試, 故京外士大夫子弟求爲進士者, 咸戮力焉. 能者往往至於奪造化. 秋風一曲·竹枝詞·關山戎馬, 或聲之於樂府而流傳也.”

느림, 회제는 平平平仄仄平平-仄仄平平平仄平(韻)으로 짜야 했다.

정약용은 『牧民心書』 禮典의 ‘課藝’에서 과거 시험의 문체와 운서의 관계, 『규장전운』의 위상에 대해 논했다.²⁵⁾ 정약용은 근세 이후로 文體가 卑下되어 句法이 澆悖하고 篇法이 短促하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과시 형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① 乾隆 초부터 갑자기 別格이 생겨 3韻으로 1段을 삼는데, 그 中段에는 반드시 對耦를 사용한다. 백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격물이 없었으니, 이것이 하나의 폐단이다. - 18구(즉 36구)의 과시체에서 3股 1단의 구성을 이루는 것을 지적한 말이다.
- ② 春亭 卞季良이 科詩를 처음 만들 때 이백 『襄陽歌』의 聲律을 모방했다. 平聲의 韻인데, 그 聲調를 上聲·去聲으로 協韻했으므로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성·거성의 운에는 그 對韻의 글자에 평성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다. - 妾자와 綠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체 句의 聲韻이 어그러지거늘, 하물며 入聲을 써서는 안 된다.

친금의 준마가 소첩을 부르니, 웃으며 조안에 앉아 낙매곡을 노래하네.
멀리 보이는 한수 압두처럼 푸르니, 포도주가 처음으로 고이는 것 같아라.
千金駿馬喚小妾, 笑坐雕鞍歌落梅. 遙看漢水鴨頭綠, 恰似葡萄初醞醅.
平平仄仄仄仄仄 仄仄平平平仄平 平平仄仄仄平仄 仄仄平平平仄平

근세의 鄭萬朝(1859~1936)는 科體詩의 平仄律이 李白의 『襄陽歌』를 모방한다고 보았다.²⁶⁾

25) 丁若鏞, 『牧民心書』 禮典 6조 제6조 課藝.

26) 鄭萬朝, 『科試及科文』, 서울大學校 奎章閣 가람文庫所藏.

詩, 古詩文中, 摘一句爲題押, 題中一字爲韻, 押其字於第四聯, 十八韻無轉韻. 例如題曰天命之謂性, 押天字, 第四韻押天, 餘十七韻, 皆用先韻. 平仄律, 倣李白詩‘千金駿馬換少妾, 笑坐雕鞍歌落梅’音節.

「襄陽歌」에 “千金駿馬換小妾, 笑坐雕鞍歌落梅. 遙看漢水鴨頭綠, 恰似葡萄初醞醅”라고 했는데, 그 평측은 “平平仄仄仄仄仄, 仄仄平平平平平. 平平仄仄仄仄仄, 仄仄平平平平平”이다.

정약용과 정만조는 과시 형식이 중국시 근체시의 평측률과 달리 ‘簾法’을 지키지 않는 기원을 지적한 셈이다.

표1. 朝鮮後期 科詩 形式(平聲韻)

初句(說主或說賓) ○○●●○○○ ●●○○○●○	初句반침(對聯) ○○●●○○○ ●●○○○●○	入題(本身) ○○●●○○○ ●●○○○●○
鋪頭(元題) ○○●●○○○ ●●○○○●○	鋪頭반침(對聯) ○○●●○○○ ●●○○○●○	鋪頭느림(對聯) ○○●●○○○ ●●○○○●○
初項 ○○●●○○○ ●●○○○●○	初項반침(對聯) ○○●●○○○ ●●○○○●○	初項느림(對聯) ○○●●○○○ ●●○○○●○
二項 ○○●●○○○ ●●○○○●○	二項반침(對聯) ○○●●○○○ ●●○○○●○	二項느림(對聯) ○○●●○○○ ●●○○○●○
三項 ○○●●○○○ ●●○○○●○	三項반침(對聯) ○○●●○○○ ●●○○○●○	三項느림(對聯) ○○●●○○○ ●●○○○●○
四項 ○○●●○○○ ●●○○○●○	四項반침(對聯) ○○●●○○○ ●●○○○●○	四項느림(對聯) ○○●●○○○ ●●○○○●○
結聯(回題) ○○●●○○○ ●●○○○●○		

科賦는 고려말에는 古賦와 律賦로 시험하되, 주로 율부를 부과했다.²⁷⁾ 즉 고려 때 부과된 율부는 古詩에서 賦題를 취하고 賦題 가운데 平聲韻과 仄聲韻을 8자 이내로 선정해서 그것을 모두 押韻했으므로 八角韻이라고 했다. 隣韻과 上·去·入 三聲도 통압할 수 없고, 제시된 韻字의 순서로 평성운과 측성운을 교대로 압운하여야 했다. 조선 세종 때는 殿試에서 律賦가 부과되었으나,²⁸⁾ 명종 때에 이르면 第一角의 破題法도 지키지 않고 隣韻과 上·去·入 三聲을 통압하는 古賦로 바뀌어 있었다.²⁹⁾ 조선후기에 이르러 과부는 압운을 자유롭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嘴韻이라 했다. 또 1구 6언에, 앞의 세 글자와 뒤의 두 글자 사이에 虛字를 놓으며, 1편은 주로 30구로 하고 제목은 역사적 사실이나 옛 시문 가운데 한 구절을 따온다는 격식을 고착시켰다.³⁰⁾ 科賦는 入題·鋪敘·回題 등의 형식을 갖추고, 역사적 사실에서 취제한 제목 아래 一句六言의 30句로 지어야 했다. 一句六言은 前三字와 後二字의 사이에 以·於·之·其·與·兮·乎 등의 虛字를 사용했다. 韻을 포기하는 대신 글자 수를 맞추면서 語助辭를 이용하게 된 것이다.

表箋은 명·청과의 외교문서에 채용된 書式이었다. 1369년(태조 2) 표전 書式 문제로 명나라와 마찰이 있었던 이후,³¹⁾ 조선에서는 표전의 문체를

27) 李炳赫(2003).

28) 『明宗實錄』卷16, 9年 5月 4日(癸卯)의 司憲府 啓에 보이는 회상 기사. 세종조 殿試에 제출한 安省中의 試券이 ‘周公輔成王以化成天下’라는 제목의 律賦였다고 했다.

29) 『明宗實錄』卷14, 8年 6月 9日(甲申) 조에 보면, 儒生들이 四六體를 익히지 않아 表箋을 전혀 짓지 않는다고 개탄하고, 인재 선발에 賦體는 前朝와 마찬가지로 모두 八角體로 짓도록 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또한 앞서 든 明宗 9年 5月 4日(癸卯)의 司憲府 啓에서도 당시 科賦가 율부가 아닌 古賦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30) 李德懋가 작성한 범례에 나온다, 『奎章全韻』의 활자본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목판본에는 일부가 권두 『義例』의 小注로 실려 있다. 李德懋, 『奎章全韻凡例』, 『靑莊館全書』 제24권 編書雜考4, 韓國文集叢刊 258, 民族文化推進會, 2000.

31) 태조 2년 3월에 발송한 國號改更謝恩 表전과 4년 10월에 발송한 正朝 表전에 대해 흥무제는 ‘輕薄戲侮’의 문사가 있다는 이유로 조선을 責讓하여, 특히 후자의 표전을 지은

과도하게 중시했다. 科試에 부과된 表文은 請表·謝表·賀表·進表·乞表·辭表 등이 있고, 20구 내외의 駢文으로 지었다.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所藏 『表藪』에 1690年(肅宗 16年, 庚午) 11月 庭試文科에서 三中으로 壯元한 韓命相의 과표가 있다.³²⁾ 한명상의 과표는 23구이다. 압운은 하지 않고, 簾律을 지켰다.³³⁾

表題는 「송 나라 右相 王淮가 朱熹의 荒政은 그의 학문을 시행한 것이니 마땅히 관직을 승급시켜 부르기를 청하다[宋丞相王淮請朱熹荒政是行其所學宜進職以徵]이다. 1181년(淳熙 8) 8월 재상 王淮는 楊萬里的 추천으로 주희를 浙東制學에 천거한 사실이 『宋史』에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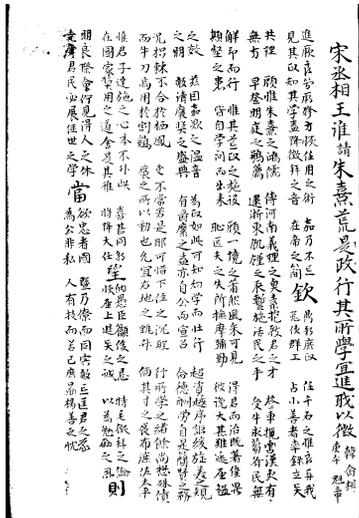


그림1. 『表藪』收錄 韓命相科表.
1690年(肅宗 16, 庚午) 11월 19일(丙午) 庭試 魁首.

進厥良簡厥修方恢任用之術, 見其政知其學蓋降徵拜之音. (仄-平)
嘉乃不忘, 在帝之簡.(平-仄)

자와 교정한 자를 송치하도록 요구하여 왔다. 이때 權近이 언경에 가서 흥무제의 御製詩에 창화하여 至誠事大의 뜻을 표하는 한편, 조선의 문화적 자부심을 주장하여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末松保和, 『麗末鮮初に於ける對明關係』, 京城帝國大學文學會論纂 第十輯 『史學論叢』 第二, 岩波書店, 1941.

32) 沈慶昊(2020), 225~300면.
33) 韓命相은 雙蓮을 딴 인물로, 과거 성적은 다음과 같다. [生員] 1679年(肅宗 5, 己未) 式年試 生員 2等 25位(30/100) [進士] 1679年(肅宗 5, 己未) 式年試 進士 1等 5位(5/100)[文科] 1690年(肅宗 16, 庚午) 庭試 甲科 1位[壯元](1/5)

欽鼎新庶政, 器使群工.(仄-平)

任千石之惟良與我共理, 點小善者率錄立賢無方.(仄-平)

顧惟朱熹之洪儒, 早登明庭之鶚薦.(平-仄)

1795년 4월 7일 정조는 제9차 초계문신들을 대상으로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표·부·율시 세 영역으로 시험을 보였다. 3일 후(4월 10일)에는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초계문신의 시험에서 출제했던 동일한 시제를 출제하고 부로 시험을 보였다. 우수한 성적을 받은 시권, 정조의 敎令과 批旨를 함께 엮어 『正始文程』 3권 1책(壬寅字)으로 간행하게 했다.³⁴⁾ 그 권2에 抄啓親試 「擬漢群臣賀意豁如也」 表題에서 二下로 장원한 崔光泰(1744~?)의 표가 있다. ‘意豁如也’는 『漢書』 『高帝紀』에서 漢高祖에 대해 “寬仁愛人, 意豁如也, 常有大度.”라고 한 말에서 따왔다.

虛頭

01 戎衣告成 撫綏垂之熙運

○○●○ ●○○○○●

靈襟不測 仰軒豁之宏規

○○●● ●○●○○○

02 浩浩其天 恢恢餘地

●●○○ ○○○● (『中庸』 / 『莊子』 『養生主』)

03 欽惟 皇帝陛下 家人不事

○●●● ○○●● 『史記』 권8 『高祖本紀』

04 任驅使於韓彭 顛倒有術

●●●○○○ ○●●● 『史記』 권8 『高祖本紀』

34) 正祖, 『正始文程三卷』, 『弘齋全書』 卷184 羣書標記六○命撰[二].

施刑賞於丁季 恩怨無私

○○●○○● ○●○○ 『史記』 권8 「高祖本紀」

本文

初項

05 念聖王迺出尋常 而其意浩無崖岸

○●○●●○○ ○○●●○○●

06 蕩乎天高而海濶 固非一德之可名

●○○○○●● ●○●●○○○ 『書經』 「咸有一德」

廓然雲開而霧消 斯致萬物之咸覩

●○○○○●○ ○●●●○○● 『周易』 「乾卦」

07 四海至廣 安用小規模把持

●●●● ○●●○○●○

千聖相傳 自有大器局稱當

○○○○ ●●●●●● 『書經』 「大禹謨」

次項

08 肆我后以天縱之質 猗大度自淵潛之時

●●●●○○● ○●●●○○○○ 『論語』 「子罕」

09 雖於酒人乎遊 不啻容數百輩

○○●○○○ ●●○●●● 『古文眞寶』 「弔屈原賦」

乃知眞帝之有 蓋嘗吞八九雲

●○●○○● ●○○●●○ 『史記』 「上林賦」

10 其中洞然 初無芥滯之微累

○○●○ ○○●●○○●

是心足以 終見樹立之甚宏

●○●● ○●●●○○○

回題

11 是知嵬乎之功 實由豁如之志

●○○○○○ ●○●○○●

12 本之方寸之內 厥象維何

●○○●○○ ●●○○

措諸事爲之間 其大無外

●○●○○○ ○●○○

13 風驅電掃 奚但神武之奮揚

○○●● ○●○○○○

雲行雨施 舉仰太空之遼廓

○○●○ ●●●○○○ 『周易』 「乾卦」

結頭

14 克符大舜之沛若 允邁后稷之屹如

●○●●○○●● ●●●○○○○ 『孟子』 「盡心」

15 極其範圍 忼然若窓牖四達

●○○○ ●○○○○●●

坦無畦畛 猗歟致庭衢八荒

●○○○ ○○○○○○ 『古文眞寶』 「酒德頌」

16 以匹夫而起 提三尺而取

○○○○● ○○●○○ 『史記』 「高祖本紀」

17 沛中固其志之不小 天下用是道而無他

●○○○○●●● ○●●●●○○○

18 二字形容 百王模範

●●○○ ●○○●

結尾

19 伏念臣等 托風雲契 依日月光

●○○● ○●●○

20 壇劔帷籌 愧二三之爲出

○○○○ ●●○○○●

尺蠡寸管 庶萬一之仰窺

●○○● ●●●○○○

한편, 『策文準的』(국립중앙도서관 소장)에 따르면, 策文의 격식은 虛頭-中頭-是故-雖然-嗚呼-然則-大抵-逐條-當今-設弊-救弊-篇終으로 이루어졌다. 조선 말 姜瑋(1820~1884)는 虛頭-中頭-逐條(軸條)-破題-大抵-當今-主意-篇終의 구조로 개괄했다.

虛頭: 破頭喝起數句, 必務切實, 而含一篇大旨, 雖用古語, 不可多也. 繼而演繹, 亦務精切, 雖多而巧轉, 則主司忘其支離. 凡爲文務精, 不務多, 務實, 不務奇, 作策者, 頭辭多且奇, 此固文之病也. 然不能忘情於科目, 則不可全背時好.

中頭: 竊謂總論大綱要領. 蓋因竊謂之意, 論是事之所以重及其緊要處.

是故: 論如是者治安, 如是者亂亡, 照應軸條中治亂事跡, 而不可太露.

雖然: 若題意不可一以是事斷之, 則用此大文, 斡旋翻說, 末則微附救弊之意.

嗚呼: 因是故雖然之意, 合而論之, 略示工夫效驗, 反覆嗟歎, 一節高一節.

然則: 收拾題中之意, 斷言救弊之策, 以數句結之, 切勿蔓說. 然是故中, 已示效驗, 而反復論之, 雖然中斷言救弊之意, 而末以緊切古語結之, 則雖無此兩題目, 亦無妨.

大抵: 中頭因破頭意思引出來, 敷衍開說, 反復論難, 各有次序, 不可紊矣. 且自竊謂起句, 已有救弊張本, 最好一篇中中頭最緊. 他處雖有小疵, 無大害. 至於中頭, 雖片言隻字, 不可用剩語也.

逐條: 下字作句, 不可凡庸, 是非予奪, 一一皆應救弊之意. 行文用對偶文字, 固俗伎陋習, 至於逐條, 不可不用也.

當今: 雖多般贊揚, 姑隱救弊工夫. 又曰若以修德爲救弊, 則當今, 勿云聖德之已修也.

設弊: 密密安排. 如問六弊, 每設二弊, 文字長短, 若對耦然.

救弊: 只據中頭意思, 變換文字, 勿令重疊. 大抵主司之意, 既及當今, 必

欲速見設弊, 既及設弊, 必欲速見救弊. 當今設弊, 不須支離, 既設弊之後, 始爲原弊, 曰弊之生既有如此如此. 愚所以以某事爲救弊之策也. 又反復申言不可不如是救弊之意, 未又略致效驗.

終篇: 承救弊之意, 而收拾一篇中餘意以結之, 或別意亦可, 太漫則尾長不掉, 太略則看作窳拙.

3. 應舉文 鍊磨에 따른 思惟樣式과 詩文素養의 형성

1) 書院의 居接과 做科業

성균관과 사부학당, 지방의 서원 및 향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은 과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서원의 課藝와 居接은 과거 대비의 제술교육을 강화했다. 居接은 고려시대 夏課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생들이 일정기간 집단으로 유숙하며 과거 대비 제술 교육을 집중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夏課란 崔沖의 文憲公徒에서 시작되어 나중에 12도 전체가 매년 여름철 더위를 피해 가을철까지 조용하고 山寺나 樓臺에 모여 詩賦와 製述을 겨루던 학교이다. 음력 6월에 鄉中의 名儒, 老士를 초치하여 開接禮로 시작하여 東西接으로 편을 짜서 우열을 경쟁했다. 또한 罷接할 때는 반드시 知製誥를 하여 試官으로 하여금 諸生의 能否를 考試하기도 했다.³⁵⁾ 조선시대 지방수령들은 興學의 방도가 課藝에 있다고 여겨 居接에 깊은 관심을 두었다. 丁若鏞(1762~1836)은 課藝와 居接의 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科舉之學, 壞人心術, 然選舉之法未改, 不得不勸其肄習, 此之謂課藝.]
守令七事, 第三曰學校興, 俗吏不知學校興爲何事, 謬以課藝當之. 其在

35) 丁淳睦(1979), 11면, 76면.

家而應課者, 謂之旬題, 其入庭而校藝者, 謂之白日場. 四境之內, 其可以應課者, 文邑不過數十人, 質邑不過五六人. 乃其收卷之數, 多者千張, 少者五百, 樵童·牧豎, 一字不通者, 咸得餘筆, 以呈僞卷. 公事既煩, 無以細考, 子弟賓客, 在旁亂批, 侍童嬖妓, 攢入僞第, 曰宴曰賞, 雜沓無序, 物情不協, 大亂以作, 彈塊飛石, 罵詈官長, 縱校縛儒, 哭聲震天, 枷繫溢獄, 箠扑填街, 此清平之世, 挑起禍難也. 乃其所謂領宴受賞而出者, 吏族居半, 餘皆樵牧. 嗟乎! 科試之法, 起於左雄, 至于今日, 流波浩漫, 使一世之人, 相率而爲倡優下賤之技, 雖其法精密有度, 猶云可愧, 況至於是乎! 夢之中又夢, 誠可歎也. ○白日場亦民弊也. 距邑數十里者, 前期入城, 其往來酒食煙鞋之費, 試紙筆墨之價, 兩人所須, 必過百錢. 若一家五六人赴場者, 費至三百, 三百者, 一犢也. 童穉聳動, 莫可禁遏, 每白日令出, 貧叟蹙頰, 亦不可不念也. 科擧無法, 故一家之費, 必至三千, 邑課無法, 故一家之費, 亦至三百, 無法之故, 民不堪矣.³⁶⁾

[課藝宜亦有額. 旣擧旣選, 乃試乃編, 於是乎課之也.]

居接者, 巨弊也. 選取數十, 使居學宮, 或居山寺, 日課其藝, 以至旬月, 名之曰居接. 徒損學財, 且貽僧弊, 不可爲也. 居首者進膳, 新入者進膳, 開席罷席, 皆有飲食, 叫呶鬪鬪, 遂爲亂階, 不可爲也.³⁷⁾

1543년 周世鵬(1495~1554)이 『白雲洞書院』을 창건한 이래 조선의 서원은 ‘士林’이 설립 및 운영의 주체가 되어 스승이나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道學을 講明하는 私學으로서 번성했다. 이 서원은 1550년에 ‘紹修書院’이라는 현판과 四書五經과 『性理大全』 등의 서적을 하사받았다. 이후 慶尙監司 安珪(1501~1560)이 1546년 5월부터는 사묘와 서원 건물을 보수하거나 추가

36) 丁若鏞, 『牧民心書』 卷八 禮典六條[祭祀·賓客·教民·興學·辨等·課藝]○課藝[禮典 第六條], 『定本與猶堂全書』, 茶山學術文化財團, 2012.

37) 丁若鏞, 『牧民心書』 卷八 禮典六條[祭祀·賓客·教民·興學·辨等·課藝]○課藝[禮典 第六條].

로 조성하고, 儒生 供饋에 필요한 물자를 도내 각 고을에 수시로 분정했다.³⁸⁾ 1546년 5월 21 안현은 訓導와 협의하여 『斯文立議』에 따라 10명에 준하는 유생을 거접시키도록 서원에 명하고, 영천에 關文을 보내 쌀을 제공하도록 했다.³⁹⁾ 6월 12일에는 유생 10여명이 와서 거접을 시작했으며, 이후 경상도 전역에서 10명 내지 20여 명이 거접하게 되었다.⁴⁰⁾ 安珉은 定時製述을 서원의 관례로 삼도록 했다.⁴¹⁾ 試題의 출제와 考試는 풍기군수가 담당하고, 때때로 관찰사나 인근 고을의 수령이 맡았으며, 試題로는 詩·賦·疑·義·策文을 부과했다.⁴²⁾ 1546년 6월 29일 관찰사 안현은 거접 유생들이 丙午式年試秋場에서 쓸 名紙를 마련해 주었다. 백운동서원은 설립된 지 3년 만에 科擧之學의 명소가 되었다. 1547년 4월 11일 안현의 후임으로 온 관찰사 任虎臣이 부임 직후 거접 유생들을 지원하고, 7월 27일에는 석차에 오른 유생들에게 가을의 謁聖試 試場에서 쓸 상품을 분급했다.⁴³⁾ 『入院錄』을 보면, 16세기 입원생 473명 가운데 小科入格者 178명, 文科合格者 50명, 小科文科에 모두

38) 『紹修書院謄錄』, 『斯文立議』 및 嘉靖 25년 3월 20일과 5월 초2일 기사; 『雜物分定行移謄錄』.

39) 金紫雲(2014), 331~358면.

40) 朴承任, 『代紹修書院有司上戶曹書』, 『嘯臯集』 卷3 書, 韓國文集叢刊 36, 民族文化推進會, 1988. “遠近欽慕學子雲集, 四時常養, 多或至二十餘員.”

41) 『紹修書院謄錄』 嘉靖 26년 2월 18일, 朝鮮史料叢刊 17, 朝鮮史編修會, 1937 影印; 『(國譯)紹修書院』, 東양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영주시, 2005. “郡書院良中, 常養儒生十員以定額爲良置, 遠近聞風, 來接有名儒生, 至於數十員爲臥乎等用良, 供饋食鹽出處, 無由乙仍干.”; 『雲院雜錄』 嘉靖 26년 2월 23일, 『(國譯)紹修書院』, 東양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영주시, 2005. “今送題脚使諸秀才, 定時以製, 科次, 如十二徒. 先生或遇試, 急作古事, 後亦爲例.”

42) 1547년 2월 屆接에서는 관찰사 安珉이 試題를 출제하고, 7월에는 榮川郡守가 출제와 고시를 담당했다. 1549년 4월의 거접에는 豐基郡守 李滉이 詩·賦·疑·義 각각 하나씩 출제하여 보냈다. 1558년 6월 거접에는 풍기군수 張文輔가 策問을 써서 보냈다.

43) 『雜物分定行移謄錄』 嘉靖 26년 4월 11일, 『紹修書院謄錄』, 朝鮮史料叢刊 17, 朝鮮史編修會, 1937 影印; 이해준 외(2014).

합격한 사람은 44명이다. 소과나 문과 중 하나라도 합격한 사람은 184명이다.⁴⁴⁾

거점은 대개 上式年에 開接日과 罷接日을 정해두고 시행했으며, 사계절에 걸쳐 개설했으므로 四時居接이라고 불렀다. 18세기에 겨울 3개월 동안만 居齋를 개설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것을 ‘三冬居齋’라고 했다. 즉, 가을과 겨울에는 居齋와 通讀을, 봄과 여름에는 白日場과 居接을 개설했다. 거점은 서원 뿐 아니라 成均館, 四學,⁴⁵⁾ 鄕校 등 관학에서도 과거 준비에 활용되었다. 또한 養士齋와 지방관이 실시한 都會, 문중 서당에서도 거점이 활용되었다.⁴⁶⁾

일부 학자들은 서원이 科業을 중심으로 하는 것에 비판적이었다. 1558년 20세로 紹修書院에서 공부하던 金誠一(1538~1593)은 道學을 탐구하기 위해 退溪 李滉이 설립한 陶山書堂으로 옮겨갔다.⁴⁷⁾ 1569년에 이황은 琴應 夾에게 보낸 서찰에서, 거점은 서원 설립의 본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⁴⁸⁾ 紹修書院의 경우, 17세기 초 서원 교육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서 과거 입격자 중심의 입원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罷格’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18세기 초에는 입원 자격이 ‘罷格’으로 확정되었다. 조선의 서원은 居齋 독서보다

44) 『紹修書院誌』 『入院錄』(1543~1696), 嶺南文獻研究所 編輯, 『紹修書院誌』, 영주: 紹修書院, 2007.

45) 『承政院日記』, 仁祖 7년 7월 11일. “經世曰: 小臣新授禮曹矣. 四學儒生居接之數, 平時則每學各置十員, 而適變之後, 減爲五員, 胡變之後, 又減而爲二員. 在國家養士之道, 豈不太狹乎? 今雖不得如平時, 復置十員, 而請令加置五員, 何如?”

46) 정순우(2013).

47) 金誠一, 『鶴峯集』 附錄 卷2 『行狀』, 韓國文集叢刊 48, 民族文化推進會, 1988. “讀書于紹修書院, 一日喟然謂曰: 人生於世, 但務舉業, 不知爲己之學, 可恥之甚也. 退溪李先生, 今之儒宗, 盍往求教乎? 遂請于判書公, 公喜而許之. 卽自書院, 俱季氏, 徒步往謁李先生. 先生見其容止, 已心愛之.”

48) 李滉, 『與琴夾之』(已巳), 『退溪集』 卷27 書, 李滉, 『退溪集』II, 韓國文集叢刊 30, 民族文化推進會, 1988. “前議書院居接事, 何以定之? 今更思之, 書院本意, 不爲習舉業設也, 而第一會儒生, 適當臨試之月, 諸生之心, 專力於彼, 勢不可禁彼業而專讀書, 緣此又令日習製述, 非設院倡學之意. 愚意不如姑停會接, 其米計買賤口外, 若有餘者, 散斂息, 以待過試後看勢會接, 庶可令專意讀書, 以爲謹始立規之道, 爲得之. 僉意以爲何如?”

講會를 강화하고 講學에서 『心經』·『近思錄』·『朱子書節要』 등을 읽었다. 16세 후반의 隱屏精舍에서는 月朔會를 시행했고, 李珣는 「隱屏精舍學規」를 제정했다. 1698년에 朴世采는 「南溪書堂學規」를 제정했다. 18세기에는 李緯의 「深谷書院學規」와 「龍仁鄉塾節目」이 나왔다. 이들 學規는 모두, 서당에 聖賢之書, 性理之說만을 들이도록 규정했다. 金元行은 「栗谷學規」와 「栗谷先生學校模範」을 참고로 하여 「石室書院講規」와 「石室書院學規」를 마련했고, 역시 서당에 과시 학습서를 지참하지 못하게 했다.⁴⁹⁾ 그러나 이후로도 많은 서원에서 科業 중시의 풍조가 사라지지 않았다.⁵⁰⁾

2) 思惟樣式的 規範化

고려, 조선의 科試와 각종 문체는 주제면에서 집권층의 사유 양식을 규범으로 제시하는 의미가 컸다. 특히 고려말 조선조는 성리학 관련 개념들을 되묻는 시험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일상의 독서 범위도 제한을 받지 않을

- 49) 李珣, 「隱屏精舍學規」(戊寅), 『栗谷全書』卷15 雜著 2. “非聖賢之書, 性理之說, 則不得披讀于齋中. 史學則許讀. 做科業者, 必習于他處.”; 朴世采, 「南溪書堂學規」(己巳十二月二十二日), 『南溪先生朴文純公文集』III, 正集 卷65 雜著, 韓國文集叢刊 140, 民族文化推進會, 1994. “非聖賢性理之書, 不得披覽. 惟史書許看. 如異端科學文字, 切不許入堂.” 金元行, 「石室書院學規」, 『漢湖集』卷14 “非聖賢之書性理之說, 則不得披讀于院中. 史冊則許讀. 若欲做科業者, 必習于他處.” 윤희면(2005), 371~383면; 박중배(2009), 59~84면.
- 50) 朴世采, 「答安岳鷲嶺院生」(壬申十一月二十八日), 『南溪先生朴文純公文集』V, 續集 卷12 書, 韓國文集叢刊 142, 民族文化推進會, 1994. “常思朱夫子及退溪先生册設書院於鄉學之外者, 爲其有補於儒學藏修之實, 固非淺鮮, 而今則只爲科士居接之所. 若其院長之任, 亦與近地士子往來講學, 如栗谷先生封事所謂海州院長之說, 然後可稱其名, 而今則只爲京宰遙領之地, 皆非先賢本意所存, 故愚常慨然於斯矣.”; 朴世采, 「答崔漢臣(是翁)問禮」(壬申十一月一日), 『南溪先生朴文純公文集』V, 續集 卷13 答問 講學論禮, 韓國文集叢刊 142, 民族文化推進會, 1994. “書院之設, 朱子退溪之意以爲國學鄉校, 有科舉格令之煩, 故令別立書院, 以便講學矣. 而率爲科士居接之所, 無一講學之實, 故愚於此等事, 不敢有說也.”; 崔是翁, 「疑禮問目」, 『東岡先生遺稿』卷3, 韓國文集叢刊續 46, 民族文化推進會, 2007.

수 없었다. 星湖學派의 주맥을 이은 黃德吉(1750~1827)은 『讀書次第圖』에서 先讀·次讀·兼讀의 목록을 도표화하되, 제자백가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⁵¹⁾

- 先讀：『小學』, 『大學』(兼或問), 『論語』(兼或問), 『孟子』(兼或問), 『中庸』(兼或問), 『近思錄』(兼李子粹語), 『心經』, 『家禮』
- 次讀：『書傳』, 『詩傳』, 『周易』(兼啓蒙), 『禮記』(兼周禮·儀禮及通解), 『春秋』(兼三傳), 『二程全書』, 『朱子大全』(兼語類), 『伊洛淵源錄』(兼理學通錄), 『性理大全』
- 兼看：『綱目』·『續綱目』, 『資治通鑑』等諸編年史, 『歷代正史』, 『東國諸史』, 『文章正宗』·『楚辭』等諸家書



그림2. 黃德吉 『讀書次第圖』

조선 조정은 陳德秀의 『大學衍義』나 丘濬의 『大學衍義補』, 李珥의 『聖學輯要』 등을 근거로 군신 관계를 설정하고 井田制의 이상에 기초하는 세법

51) 黃德吉, 『讀書次第圖(竝說)』, 『下廬集』卷8, 韓國文集總刊 260, 民族文化推進會, 2000.

시행(초기에는 貢法, 후기에는 大同法)을 정당화하며 成均館·四部學堂·鄉校의 官學을 활성화하고 書院 교육을 교육정책에 수렴시키고자 모색했다. 策題는 그 의도를 반영했다. 17세기 이후에는 당대의 시무를 策題에 반영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져, 大同法 개혁 문제가 자주 제시되었다.⁵²⁾ 영조 때에는 君師의 이념을 묻는 문제가 頻出했다. 1750년(영조 26) 良役을 均役法으로 개편하고 均稅(雜稅) 부과와 효율성에 대한 논의를 策題에 반영했고, 1795년(정조 19)에는 還餉策의 방안을 責問으로 물었다. 하지만 策問과 對策은 조선왕조가 君臣義理·用人法·經濟策·性理論을 知識層에 貫徹시키는 장치로서 기능했다.

18세기 후반 조선을 통치한 正祖는 독서의 범위를 넓히고자 했다. 즉, 정조는 1783년(정조 7)의 丁酉字本 『字恤全則』 1권⁵³⁾에서 흉년의 棄兒들을 보살피는 문제와 관련하여 『관자』의 ‘慈幼’說을 인용했다.⁵⁴⁾ 正祖의 世孫 時節 師傅 徐命膺(1716~1787)은 왕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관자』를 폄하하여 왔지만 천하를 경영하려면 『관자』를 貶視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管子解』를 저술했는데, 『管子解序』가 현전한다.⁵⁵⁾ 하지만 당시의 유생

52) 안소연(2019).

53) 正祖, 『弘齋全書』 羣書標記 一 御定 二 ‘字恤典則一卷 刊本(1783, 正祖 7, 癸卯)’. “字恤典則一卷 管子九惠之目 其二曰慈幼, 宋制孤獨不能自存者 居以官屋, 給以常平息錢, 朱子與趙子直書 尤斷斷於舉子附籍. … 於是, 廟堂撰進節目 稟旨裁定, 其法荒歲行乞之兒 以十歲爲限 道旁遺棄之兒 以三歲爲限, 京則五部 隨聞見報賑恤廳, 外方則面任報于守令, 行乞只於荒年限, 麥秋留養遺棄, 勿論豐歉, 置乳母留養, 皆官給米藿綿絮. 其有自願收養爲子爲奴者聽. 凡九條. 眞諺翻謄, 以丁酉字印頒于五部八道.”

54) 九惠는 『管子』 「入國」에 나오는 九種 仁政으로, 老老·慈幼·恤孤·養疾·合獨·問疾·通窮·振困·接絶이다. ‘慈幼’에 대한 설명을 보면, 國都에 掌幼官을 배치하고 어린 자녀를 둔 사람 중 양육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 자녀 숫자에 따라 아이가 셋인 경우에는 婦孺를 면제하고, 넷인 경우에는 冢家의 征을 면제하며, 다섯인 경우에는 襦를 주고 아이가 자랄 때까지 2인의 식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55) 徐命膺, 『管子解序』, 『保晚齋集』 권7. “梓匠之爲梓匠也, 梟而繩之, 懸而望之, 參而圍之, 斧鋸審面, 各有法術, 能者成不能者敗, 況於爲天下國家乎? 爲天下國家者, 自周衰始

들은 독서 범위를 확장시키지 않았다. 정조는 1798년 9월 9일 成均館 居齋 儒生 대상의 製述 시험인 菊製 때 『관자』에서 뜻을 취해 「抱蜀不言鴻鵠鏘鏘律賦」를 부과했으나, 유생이 제목의 뜻을 알지 못하여 모두 백지를 제출 하자, 이를 개탄하는 別諭를 菊製入場諸生에 내렸을 정도이다.⁵⁶⁾

分王伯, 語其道則王純而伯雜, 王實而伯假, 王內而伯外. 語其法則王與伯一而已. 譬之梓匠, 王其誠心精藝, 以事其事者也. 伯則但以其法術人以取食也. 然取食者之斧鋸審面, 與事其事者之斧鋸審面, 未嘗有二法也. 五伯之佐, 唯管仲才且雄, 今讀其所著管子一書, 達而理, 織而周, 嚴而不刻, 幾與周官六典相表裏. 但未知其所獨知之中亦能有天德王道否乎? 則是於王, 蓋得其半而失其半矣, 故夫子大管仲者, 大其法之大也. 小管仲者, 小其於道爲小也, 而孟子則以道自任, 故曰: 何曾比予於管仲? 諸葛孔明則所取者法而已. 故自比於管仲. 歷觀聖賢之論而細推之, 其不可以管仲之小, 棄管仲之大也明矣. 然自漢以後, 管子一書, 掩晦不章, 人之視之, 曾不若荀況·揚雄·王仲淹之書, 夫三子者, 根據六經, 猶有所未醇, 則有六經之日星, 斯道, 雖無三子者, 未見其闕, 而若管子之詳於法, 則往往有六典之所未及者. 且其言皆經歷而去取之, 非空言也. 如不欲爲天下國家則已, 欲爲天下國家, 則吾見此書之未可少也. 亦安知不爲梓匠於天下國家乎? 於是疏其義, 證其訛謬, 以與世之志經綸者, 輔其能焉.”

56) 正祖, 「示菊製入場諸生」(戊午), 『弘齋全書』卷56 雜著3. “爾等, 上舍生也. 讀書多聞, 豈比年淺四學生, 而古往今來, 拖白於御題之舉, 爾等曾或聞之否? 況所揭者非難知者, 多士之魯莽, 卽予之恥. 此所以還給草記, 別諭爾等也. 嘗聞蜀祠器也, 言人君敬守祠器, 以禮率臣工, 則雖靜拱不言, 廟堂之政, 自無不修, 於是乎其德之感教之行, 而著應於外者, 鴻鵠鏘鏘, 而民之詠歌歎美之. 有曰: ‘抱蜀不言, 廟堂既修, 鴻鵠鏘鏘, 維民歌之.’ 此管子之言也. 予每三復是言, 適因菊製, 聽僞起想, 信筆書下. 蚤知爾等如彼固陋, 則易知不難解之句話, 何斬而不揭示乎? 過信爾等, 認謂必曉, 致此不緊酬應於昨日勞心之餘, 甚可歎也. 律賦製進, 尤致夜深, 以科賦近體應試, 爲掩瑕類, 行此苟且之舉, 而事體極不成說, 限三日, 隨其題下製進, 少贖今日之罪, 少雪今日之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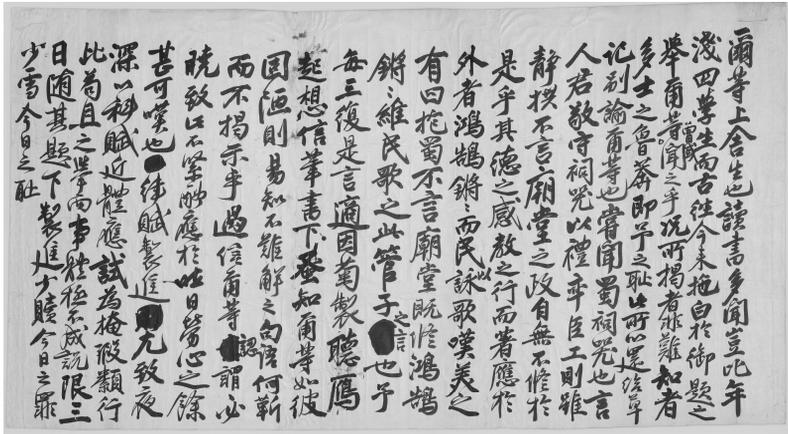


그림3. 正祖御筆「示菊製入場諸生」(寶物第1632-3號, 韓國學中央研究院藏書閣)

四書疑 定式은 程朱 經解를 인용할 것을 규정했으므로, 試題와 答안의 인용은 四書大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주자설의 初晩異同과 晩年定論說, 異端 규정과 陽明學 배척 등을 주요한 과제로 삼았다.⁵⁷⁾

3) 詩文素養의 共有

應舉文 즉 功令文의 문체는 문장가의 문체와는 상이했다. 朴趾源(1737~1805)은 “사대부로 태어나 어렸을 적에는 제법 글을 읽을 수 있으나, 자라서는 功令을 배워 수식하는 변려체 문장을 익힌다. 과거에 합격하고 나면 이를 弁髦나 筌蹄처럼 여기고, 합격하지 못하면 늪도록 거기에 매달린다. 그러하니 어찌 다시 이른바 古文辭가 있다는 것을 알겠는가!”⁵⁸⁾라고 개탄했다.

57) 윤선영(2020), 501~537면.

58) 朴趾源, 『自笑集序』, 『燕巖集』卷3, 韓國文集叢刊 252, 民族文化推進會, 2000. “士大夫生而幼能讀書, 長而學功令, 習爲駢儷藻會之文. 既得之也, 則爲弁髦筌蹄. 既未得之也, 則白頭碌碌, 豈復知有所謂古文辭哉?”

그 자신은 1771년(영조 47) 이후로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문장가’의 길을 나아갔다.

하지만 士大夫로서 문자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應擧文體의 연마를 통해 行文의 관습과 用韻의 방식을 익숙해 있어야 했다. 과거의 문체를 익힌 지식 층은 공적 문자활동 이외에, 사적 문자활동의 교류권에 편입될 수 있었다. 고려 중엽 이후 지식인의 사적 문자활동 양상은 다음과 같다.⁵⁹⁾

① 簡札의 교환

고려, 조선의 지식인들은 정서와 사상의 교감을 위한 통로로 簡札을 이용했다.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조선중엽에는 別紙의 형태로 理氣說을 논하거나, 서신에서 상대방의 서신 내용을 節錄하면서까지 장문의 형태로 의론을 전개하고는 했다. 그리고 명나라 말의 短小精緻한 척독이 발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16세기의 許筠은 척독을 서신과 구별했다.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예술양식으로의 척독의 문체가 널리 활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規式을 간찰이 근대 이전 조선의 문자생활의 근간을 이루었다.

② 詩會와 酬唱

고려 중엽 이후 관료 층은 詩會를 통해 정서적 교감을 나누었다. 시사의 활동은 19세기까지는 서울을 중심으로 활발했다. 사대부 문인이나 중간 계층의 지식인들의 각종 모임에서 주령의 하나로서 시령을 행했는데, 分韻·競作·聯句·呼韻·呼字 등의 여러 방법을 사용했으며, 그밖에 여러 가지 規式을 사용했다. 여성 사대부들이 호운 작시한 예도 있다. 俞壽閔 徐氏

59) 沈慶昊(2009), 413~449면.

(1753~1823)의 『鷗湖의 16군데 경치를 운자를 불러주어 함께 지었다(鷗湖十六詠命韻共賦)』는 그 한 예이다. 또한 지식인들은 시회 이외에도 개별적 수창(酬唱)을 매우 중시했다. 작시의 능력은 지식인다움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매우 중시되었다.

③ 서발문, 비지·행장, 상량문의 찬술

고려 중엽 이후 문집의 刊役 때 작성하는 자서나 타인작의 서발문은 곧 문학과 예술뿐만 아니라 역사와 철학에 대한 사유양식을 타인에게 제시하는 통로였다. 이러한 서발문은 잠재적 의론과 논쟁을 유발했다. 또한 조선후기에는 行卷 양식의 시문집에 서발문을 써주거나 비평을 첨부하는 일이 유행했다. 17세기 이후로 조선에서는 가문 중시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遺集을 간행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어, 서발문의 제작이 더욱 많아졌다. 경학이나 사학의 경우, 본격적 저술보다도 서평 형태의 서발문이나 논변류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지식인들은 立言者로서 行狀과 碑誌를 찬술해야 했다. 또한 사적 건축이나 공적 영조물의 상량식 때 상량문을 찬술함으로써 한 집단의 문자생활에서 자신의 위상을 지켜나갔다. 서발문, 비지·행장, 상량문의 찬술 능력은 科業에서부터 배양되는 경우가 많았다.

④ 刊役과 講學을 통한 학맥의 확인

조선시대에 들어와 지식인층은 스승이나 집안 어른의 문집을 간행하는 일에 상당한 심력을 기울였다. 집안 어른의 문집을 간행하는 일은 간혹 실질을 벗어나 사적 편협성이 개입되는 예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스승의 문집을 간행하는 일은 사승을 확인하고 발전시키는 일과 관계되어 공적 성격을 띠었다. 또한 조선후기 지식인들은 書院에서의 講學을 통해서 학문적 결속을 다졌다. 이때 科學 合格 與否, 登科 科種의 종류 등은 간역 사업과 강학에

서의 지위를 강화시켜 주었다.

4. 記敍規範 形成과 書籍編纂

1) 記敍規範의 形成

고려, 조선의 관료들은 과시의 준비 과정에서 한시의 작법, 한문 行文의 규칙, 平仄交互·用韻法을 익혔다. 이 가운데 조선 전기의 과시는 歌行體를 연상시키는 고시였다. 따라서 과거를 준비하는 유생들이나 소과 합격자들은 중국 시인들의 문집이나 시선집을 숙독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조선의 조정에서도 杜甫, 李白, 韓愈, 柳宗元, 王安石 등의 시집 혹은 문집을 정교하게 교감해서 간행하거나 『纂註分類杜詩』 등의 纂註本을 간행해서 그 요구에 대응할 수 있었다.

① 『樊川文集』: 『文集夾註』 4권과 『外集夾註』 1권. 1416년(태종 16)에 公山(公州)에서 開刊, 1440년(세종 22) 6월 전라도 錦山에서 개간, 중종 연간에 飜刻本이 나왔다.

② 『朱文公校昌黎先生集』: 崔萬理·金鑣·李永瑞·趙須 등이 왕명에 따라 신편, 1438년(세종 20년) 간행했다.

③ 『纂註分類杜詩』: 1443년(세종 25) 4월 편찬령이 내려, 安平大君이 총괄하고 辛碩祖 등 집현전학사 6인 참여해서 편찬했다. 제주감인자체 활자본과 훈련도감자본 등 여러 판본이 있다.

④ 『精選唐宋千家聯珠詩格』: 원나라 于濟 撰, 評點, 蔡正孫 補足, 조선 徐居正 등 注, 安琛·成倪·蔡壽·權樾·申從漢 奉命補削. 갑진자본 20권 2책이 있다.

⑤ 『韓文正宗』: 2권 2책. 眞德秀 『文章正宗』에서 韓愈 문장만 분출하고,

元·明의 蔣之翹, 歸有光, 游居敬 평주를 집성한 것이다. 평양부윤 申公濟와 安秀岑, 洪愼, 李壽堅 등이 편찬해서 1532년(중종 27) 평양에서 목판으로 간행했다. 중앙에서 갑진자 활자본도 나왔다.⁶⁰⁾

金錫胄(1634~1684)는 『古文百選』·『海東辭賦』·『儷文抄』 등의 편찬자로 저명한데, 그는 초고를 서너 번 고치지 않고서는 내놓지 않을 정도로 문장을 다듬는 것으로도 유명하다.⁶¹⁾ 金錫胄는 趙顯期(1634~1685)와 함께 申最(1619~1658)의 문하에서 科體를 익혔다. 신최는 金錫胄의 요청으로 『皇明二大家文抄』를 편찬해 주었다.⁶²⁾ 조현기는 小科에 대비하기 위해 長句를 연마하여 과체시를 연습하고, 1659년 이후로는 대과에 대비하여 策과 論의 공부에 전념했다.⁶³⁾ 그 공부는 평소 글쓰기에 飜案의 관점을 도입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⁶⁴⁾ 김석주는 나이 19세 되던 1652년에 당시 同接과 함께 宋玉의 『風賦』를 模擬하여 『雪賦』를 제출하는 등, 과문을 공부

60) 목판본은 蓬左文庫와 內閣文庫에 있고, 갑진자본 2권(부록 1권) 1책이 일본 국회도서관에 있다.

61) 金得臣, 『終南叢志』, 趙鍾業編, 『韓國詩話叢編』 3. 東西文化院, 1989 影印. “雖作數句, 語必刻意覃思, 草藁不三四易, 不出也.”; 正祖, 『弘齋全書』 卷162, 日得錄 2, 文學2. “畢竟不留原藁一字, 而文更圓好, 此法極有意思.”

62) 藏書閣本 『春沼子集』의 引文에 ‘歲舍癸巳杪秋’라 적혀있다. 申最, 『鹿門翁州兩集文抄引』, 『春沼子集』 卷5, 韓國文集叢刊續 34, 民族文化推進會, 2007. “表姪金錫胄, 要余抄兩家之文, 以便服習.” 이병주, 『金錫胄의 科文學習 研究』, 『大東漢文學』 40, 大東漢文學會, 2014, pp.145~181.

63) 趙顯期, 『一峯先生集序』, 『一峯集』, 韓國文集叢刊續 42. 民族文化推進會, 2007. “余自少時, 爲觀國子試, 粗治唐宋人長句學, 作程式詩, 才鈍不甚工, 而性又不屑也. …… 自己亥以後, 專事科場論策, 間嘗留意古文.”

64) 金錫胄, 『讒毀』, 『息庵遺稿』 別稿 上, 韓國文集叢刊 145, 民族文化推進會, 1995. “至於子胄之功, 不免鴟夷之浮, 或以爲君寵之不篤, 而楚姬之恩愛方隆, 又何以見劓鼻之禍歟? 鼂令之智, 竟被東市之誅, 或以爲深刻之賈禍, 而屈原之廉潔無私, 又何以有汨羅之沈歟? 申生待烹之殃, 或值人倫之變, 而伯奇非不遇慈父, 乃有伯勞之傷. 梁園曳裾, 鄒陽梁賦之冤, 或值主德之昏, 而賈生非不遇明主, 乃有長沙之屈, 抑又何歟?”

했던 추억을 회상했다.⁶⁵⁾ 김석주는 登第 이후, 科擧를 준비하는 同宗 兄弟을 위해 『古文百選』을 抄選해 주었다.⁶⁶⁾ 조선후기 지식인들은 과거 응시 자체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입장을 취했으나, 과거 시험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金昌協(1651~1708)은 과거 공부도 그 자체의 體裁와 程式이 있지만, 성현의 책을 읽어 반드시 필세가 활발하고 문장의 조리가 밝고 분명한 연후에야 바야흐로 좋은 문자를 만들 수 있게 되어 넉넉히 반드시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⁶⁷⁾

2) 韻書體系의 踏襲과 『千字文』의 圈發標記

고려 德宗 연간(1031~1034)에 『禮部韻略』이 수입된 이후 이 운서는 복간되어 유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예부운략』의 여러 판본 가운데서도 王文郁의 『排字禮部韻略』을 활용했다. 『예부운략』은 조선 초에 이미 지방 목판본이 나왔고, 후기에는 여러 지방에서 목판본이 나왔으며, 戊申字의 활자본도 간행되었다. 이후 편자 미상의 『三韻通攷』를 토대로 1702년 朴斗世의 『三韻補遺』, 숙종 때 金濟謙·成孝基의 『增補三韻通考』가 나왔다. 1747년(영조 23) 朴性源은 『華東正音通釋韻考』를 엮어

65) 金錫胄, 『內弟權知承文院副正字申君墓誌銘』, 『息庵遺稿』 卷23, 韓國文集叢刊 145, 民族文化推進會, 1995. “至壬辰首夏, 余春糧東出, 謁先生于白雲樓上, 因進余所爲詞賦數篇以求教, 先生謂曰, 此間亦有文通彩筆手, 仍出春愁賦以示之, 卽瑞明所著. … 余遂與君約同爲舉子業. 是冬, 余又來廣陵謁先生, 仍留一夕大雪, 先生命余二人賦之, 君遂做司馬長卿上林.”; 金錫胄, 『雪賦』, 『息庵遺稿』 卷1. “楚襄王旣遊於蘭臺, 使宋玉賦雄雌之風, 將置酒于章華之宮, 緒風颯拂, 繁露紛零, 天慘慘兮日淒淒, 霰雰雰兮雪霏霏. 王乃厭晨謹倦夕飢, 去雲闌來雪殿, 發素麻之詠, 動黃竹之謳, 俯而哦兮雲澤之瓊墟, 仰而睇兮風岑之瑤丘.”

66) 金錫胄, 『古文百選序』, 『息庵遺稿』 卷8. “兵愈少而其選愈精, 選愈精而其勝愈奇. … 惟文亦猶是焉. 夫自代繩以來, 六籍紛然汗灑, 費藤耗毫, 溢宇充棟, 而天下之書衆矣, 誦習之家, 恒不勝其繁且難, 而於是乎抄選之事件.”

67) 金昌協, 『贈徐生文若序』, 『農巖集』II, 卷22, 韓國文集叢刊 162, 民族文化推進會, 1996.

『삼운통고』에 한글 음을 표시했고, 정조 때 洪啓禧는 글자를 증보하여 『三韻聲彙』를 편했다. 그런데 정조는 『삼운통고』 이래 조선 운서가 平上去 3성을 한 면에 배열하고 入聲을 별도로 배치하여 온 것을 비판하고, 4성을 한 면에 배열하여 『奎章全韻』을 엮게 했다. 조선후기에는 입성을 권말에 따로 배열한 『三韻通考』 체제가 유통되었는데, 과사에서 입성을 사용하지 않는 관행을 반영한 듯하다.

고려와 조선의 과거에서 가장 중시된 것은 有韻의 詩賦였다. 조선후기에는 특정한 科詩(功令詩) 형식에 따라 평측 안배와 압운 능력을 시험했다. 조선 초 명나라 『洪武正韻』을 받아들여 한글로 注音한 『洪武正韻譯訓』을 간행했으며, 『홍무정운』을 기초로 한자음을 첨부한 『東國正韻』을 편찬했다. 하지만 『東國正韻』의 운목 체계는 지속적으로 계승되지 않았다. 조선시대에 편집된 운서는 성모의 독음에 정음과 속음의 구별이 있었고, 배열 순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나, 운목 체계는 106운을 기본으로 삼았다. 이것은 제술에서 압운 체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

고려와 조선에서 과거에서 詩賦를 과목으로 채택함으로써, 지식계층은 한자의 평측과 압운에 대해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독서계층의 자제들은 早期에 평측과 압운을 공부해 둘 필요가 있었다. 평측과 압운은 韻書의 106韻目を 암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되, 각 글자의 평측을 우선 용이하기 파악하도록 識字教育의 단계에서 평측을 함께 공부하는 방안이 고려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識字課本人 『千字文』에 聲調를 표시해서 교육하는 방법이 안출되었다.⁶⁸⁾ 1583년(선조 16) 정월, 중앙에서 韓濩(1543~1605)의 해서체 글씨를 저본으로 『石峰千字文』을 간행하면서 한 글자마다 한글 석음을 하나만 표기했으며, 상성과 거성에 성조는 표시

68) 沈慶昊(2015), 7~45면.

했다. 1597년(선조 30)에는 초서체로 본문을 새긴 『草千字文』이 나왔다. 그리고 1691년(숙종 17)에는 『石峰千字文』에 국왕 肅宗의 서문을 붙인 해서체 『御製序文千字文』이 나왔다.

『石峰千字文』의 官版本 계통은 聲調를 표시하는 白圓을 판각했다.

(a) 1583년(宣祖16) 정월 『石峰千字文』 原刊本(일본 國立公文書館 소장) : 上聲과 去聲에 白圓聲點.⁶⁹⁾

(b) 1601년(辛丑, 宣祖34) 改刊本 : (아래 『御製序文千字文』의 卷末 刊記에서 추정)

(c) 1691년(肅宗17) 『御製序文千字文』 : 上聲과 去聲에 聲點.

(d) 1710년(肅宗36) 『御製序文千字文』 : 上聲과 去聲에 聲點.⁷⁰⁾

3) 受驗用 書籍의 輸入, 編纂, 流通

『세종실록』 권55, 세종 14년(1432) 3월 11일(경오)의 조항에는 과거시험에 책을 숨겨 표절하는 생도 등에게 응시를 정지하게 하라는 下敎가 실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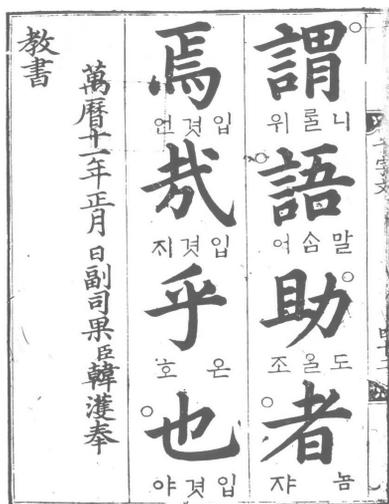


그림4. 日本國立公文書館藏 『石峰千字文』 原刊本(1583) 卷末

69) 『石峰千字文』(宣祖16年本 및 肅宗御製序文 千字文)은 聲調를 표시하되, 上聲과 去聲에만 白圓點을 붙였다. 入聲은 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上聲과 去聲만 표시한다면 平聲은 자연스레 변별되므로 平聲에도 아무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근세조선의 『千字文』 판본 가운데는 상성·거성·입성의 축성에 흑색 권점을 표시한 것도 나왔다.

70) 日本 早稻田大學 所藏 日本覆刻 『石峰千字文』 : 1710년(肅宗36) 판본을 저본으로 하되 肅宗 御製 序文과 聲點을 제거했다.

있다. 그 가운데 『源流至論』·『策學提綱』·『丹墀獨對』·『宋元播芳』 등을 참고서로 삼되, 표절해서는 안 된다는 언급이 있다. 『단종실록』 권2, 단종 즉위년(1452) 8월 23日(계미)의 기사를 보면, 중국 사신들을 接伴한 조선의 관료가 조선의 유생들이 『三場文選』와 『文範』을 보고 지은 까닭에 科文이 서로 비슷하다고 지적했다.⁷¹⁾

또한 조선전기에는 중앙과 지방에서 원·명의 과거수험용 도서와 進士 壯元의 製述集을 인쇄하여 유포하다가 점차 조선의 문과 장원 제술집을 인쇄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조선전기에는 律賦·表·箋·策文을 연마하는데 참고할 만한 서적을 官撰하여 배포했다.

조선 전기에 과거 준비용 교본으로 간행된 서적들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① (宋)林駟·黃履翁編 『新箋決科古今源流至論』 前集10卷 後集10卷 續集10卷 別集10卷. 전·후·속집을 편찬한 林駟과 별집을 편찬한 黃履翁은 朱熹의 理學思想을 존신한 인물들이다.⁷²⁾ 宋代의 典章制度에 관한 사항을 239題로 分門했다.⁷³⁾
- ② 『文範』: (元)歐陽起鳴의 『歐陽論範』을 가리키는 듯하다. 명나라 成化

71) 陳鈍·李寬詣成均館, 入文廟, 再拜於庭下, 入大成殿內, 周覽還出, 入東廡序立行揖, 入西廡亦如之. ……鈍曰: “將此生日課文章來.” 以『觀魚臺賦』·『進三綱行實箋』·『禮記義』及策問各一道示之, 鈍見賦曰: “此體制, 似有元朝士習.” 邊曰: “我國儒生, 看元朝『三場文選』·『文範』製述, 故相似也.” ……鈍又問: “科舉文章印頒乎?” 答曰: “無.” 鈍曰: “中朝高第文章, 皆印頒.” 遂還館作詩, 送于致峒等.

72) 序는 嘉熙 丁酉(1237) 黃吉父가 작성했다. 중국본으로는 元나라 延祐四年(1317) 圓沙書院刻本(北京國家圖書館, 北京中共中央黨校圖書館)이 있고, 명나라 宣德二年(1427) 建陽書林劉克常刻本, 宣德二年(1427) 建陽書林詹氏刻本, 宣德二年(1427) 建陽書林朱士全刻本, 弘治二年(1489) 梅隱書堂刻本, 嘉靖十六年(1537) 白珩刻本, 萬曆十八年(1590) 書林鄭世魁宗文堂刻本 등이 있다. 이외에도 明刻本 二種이 있다고 한다. 명나라 尙忍齋의 1480년 목판본도 있고, 上海古籍出版社 1992年 5月 出版影印 『四庫類書叢刊』에 들어 있다. 沈津, 『『新箋決科古今源流至論』의 版本鑒定』, 大連圖書館.

7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宣德丁未(1427)仲夏日新書堂刊行’의 元板을 복각한 것이다.

七年 賈奭 刻本이 보고되어 있는데, 조선에서는 갑진자본 零本(2권 중 상권 65장)이 있다. 『단중실록』 권2, 단중 즉위년(1452) 8月 23日 (계미)의 기사에 과거수험용 도서로 ‘文範’의 서명이 나온다.

- ③ (明)劉仁初編, 『新刊類編歷擧三場文選對策』: 元代에 科擧答案들을 편집하여 1341년 6월 江西省에서 간행했다. 『新刊類編歷擧三場文選經疑』 권1~3, 『新刊類編歷擧三場文選古賦』 권1~8, 『新刊類編歷擧三場文選對策』 권1~8으로, 고려말 조선초의 文科初試·覆試의 初場·中場·終場 과목에 각각 대응한다. 『세종실록』 세종 11년(1429) 5月 28日(계유) 조에 『三場文選』의 인쇄·반포 기사가 있다. 세종-단중 연간에 『新刊類編歷擧三場文選』 전체를 활자로 간행했고, 그것이 뒤에 整版되었다. 梁誠之(1418~1482)도 科文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三場文選』을 인쇄하고 반포하여 모범으로 삼을 것을 말했다.⁷⁴⁾
- ④ 『御試策』: (明)劉仁初編 『新刊類編歷擧三場文選』 10부 72권의 제10부 일부를 발췌하여 인쇄한 것이다. 1315年(延祐乙卯)부터 1333年(元統癸酉)까지 장원급제한 몽고색목인·남인·한인의 대책문을 선집했다. 1392년(恭讓王 4) 書籍院에서 간행한 후, 조선전기애 乙亥小字體木活字本과 甲辰字 등이 나왔다.⁷⁵⁾
- ⑤ (元)祝堯編 『策學提綱』, (元)吳黼編 『丹墀獨對』: 원나라 仁宗(1312~1320)이 과거제도를 회복하고 大元 兀魯思(ulus, 領地)의 科擧에서 對策 과목을 위주로 했으므로 수험용 도서로 편찬된 것인 듯하다.⁷⁶⁾

74) 梁誠之, 『便宜四事』(明教化, 正風俗, 興學校, 議科擧)[壬辰二月二十日, 以南原君上], 『訥齋集』 卷4 奏議, 韓國文集叢刊 19, 民族文化推進黨, 1988.

75) 尹炳泰(1997); 천혜봉(1998), 23~50면. 『淸芬室書目』에는 중종·선조 때의 목활자 인본(목록에 방을해자소자로 기록) 1권 1책이 저록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갑진자본, 고려대학교 華山文庫와 晚松文庫에는 을해자 소자본이 收藏되어 있다.

76) 원나라 池州路 建德縣學 教諭 程端禮는 科擧考試學習法을 위해 『程氏家塾讀書分年日程』을 편찬하고, 延祐 2年(1315) 서문을 작성했다. 조선후기 安鼎福이 『德谷書齋月朔講

조선 세종이 수험용 도서로 언급했다.⁷⁷⁾

- ⑥ (宋)魏齊賢·葉棻共編 『聖宋名賢五百家播芳大全文粹』(‘宋播芳文粹’, ‘宋播芳’)⁷⁸⁾ : 『세종실록』, 세종 6년(1424) 1월 11일(무자) 조에 大小文臣에게 鑄字所 인쇄의 『宋播芳』을 한 부씩 내려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庚子字本이었던 듯하며, 이후 乙亥字本이 1542년 이전 간행되었다.⁷⁹⁾
- ⑦ (高麗)柳珣等編 『聖元名賢播芳續集』(‘元播芳’) : 1373년(高麗恭愍王 22) 목판 간행되었다.⁸⁰⁾ 조선시대에 乙亥字本과 甲辰字本이 나왔다.
- ⑧ (朝鮮) 趙仁奎編 『儷語編類』 : 1533년(중종 28) 서문이 있다. 詔·勅

會約』에서 이 讀書分年日程을 인용하는 등, 程端禮의 『日程』은 조선에도 영향을 끼쳤다. 祝堯은 원나라 延祐 五年(1318) 진사 급제했는데, 歷代辭賦總集인 『古賦辯體』를 엮어 저명하다. 宮紀子, 『モンゴル時代の出版文化』, 名古屋大學出版會, 2006. 第八章(『對策』, 之對策—科舉與出版—) 4. 對策之現實(『丹墀獨對』—書所見政書의 流通與接受).

- 77) 원간본은 현전하지 않는 듯하다. 명나라 洪武 19년 건안서림 葉景逵 廣勤堂刊本이 있다. 杜信孚의 『明代版刻綜錄』 第五卷과 第六卷에 廣勤堂 간행의 서적이 저록되어 있다. 廣勤堂은 원나라 福建 建安 葉日增의 書坊 이름이다. 葉氏는 建安全氏 勤有堂 版片을 얻어서 版心을 바꾸어 계속 간행했다. 그 아들 葉景逵가 이어서 출판을 했다.
- 78) 『四庫全書』에는 江蘇巡撫采進本 『五百家播芳大全文粹』 一百十卷이 들어 있다. 이 책은 남송 초판은 百卷이었지만, 葉棻이 150권으로 증보했다. 『송과방』은 宋代의 문장을 선록했으며, 그 가운데 駢體가 10분의 6, 7에 해당한다. 문체는 三十類로, 表·啓·制辭·奏狀·奏劄·封事·長書·疊幅小簡·四六劄子·尺牘慰書·青詞·朱表·釋疏·祝文·婚啓·生辰賦頌詩·樂語·勸農文·檄文·雜文·上梁文·祭文·挽詞·記·序·碑·銘·贊·箴·頌·題跋 등이다. 그 가운데 表·箋·制·詰·簡·疏·頌·記·序·銘·跋 등은 駢體가 많다.
- 79) 국립중앙도서관에 庚午字本 『宋朝名賢五百家播芳大全文粹』 卷4 33張이 있다. 日本 國立公文書館 內閣文庫에 乙亥字本 『聖宋名賢五百家播芳大全文粹』가 있다(“嘉靖二十一年五月日 內賜司諫院司諫金瑞星 宋播芳一件 命除謝恩”의 內賜記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을해자본의 卷2(中·下), 卷3(上·中·下)가 있다. 북경도서관에도 “宣賜之印”이 있는 조선 고활자본이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岳振國(2007).
- 80) 內閣文庫에는 木板本 7책이 소장되어 있다. 卷第一上~下 『聖宋名賢百家播芳大全文粹』, 續集 卷1~卷6 『聖元名賢播芳續集』으로 되어 있다. 일본 宮內省 書陵部の 舊 養安院藏書로 원나라 刊本을 복각한 책을 뒤에 가서 인쇄한 판본이 있다. 藤本幸夫(2006), 56~57면.

·御札·制誥·批答·表·箋·啓·狀·檄·露布·致語·上梁文·書判·祝文·靑詞·廟碑 등 20종 문체를 다루었다.⁸¹⁾

⑨ 『殿策精粹』, 『東人策選』, (朝鮮) 金驥孫編 『東國壯元策』, 『策文』 : 중종·선조 연간에 『殿策精粹』(2권 1책) 木活字本,⁸²⁾ 『東人策選』(1권 1책) 倣乙亥字小字木活字版, 『東國壯元策』(甲集 1권 1책) 倣乙亥字小字木活字版, 『策文』(1권 1책) 木活字本 등이 나왔다.⁸³⁾ 중종 때 乙亥字로 간행되었다는 『東人策問(乙集)』 10권 및 『東人策選』 1권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⑩ 『律賦表箋』 : 白居易·柳宗元·王維·駱賓王·王勃 및 金富軾 등의 賦와, 崔恒·尹淮·南秀文 등의 表箋을 수록했다. 李仁榮의 『淸芬室書目』에 중종·명종 연간 乙亥字本 『律賦表箋』(잔본 1책)이 저록되어 있다.

⑪ 『東國論選』 : 고려 말부터 조선 중종 때까지 17명 朝鮮人의 論 25편만을 한데 모았다. 科文의 우수작이 상당수 들어 있다. 간행 하한은 1583년이다.⁸⁴⁾

⑫ (朝鮮)安瑞編 『續文範』 : 계명대학교 東山文庫에 목판본 2권 2책 가운데 권2의 1책만 남은 殘本이 있다. 모두 77張이다. 中和郡守 安瑞의 識에 따르면 嘉靖 乙丑(=가정 44년) 즉 조선 명종 20년(1565) 良月(10월) 上澣에 평안도 中和에서 간행했으며, 책판의 舊藏處는 淸涼書

81) 국립중앙도서관에 古活字本(後期木活字) 20권 완질이 있다. 李植이 『儷文程選』을 편하자, 鄭百昌이 『儷文程選序』를 써주었는데, 그 冒頭는 趙仁奎의 『儷語編類序』를 옮기다시피 했다. 鄭百昌, 『儷文程選序』, 『玄谷集』文集 卷2 雜著.

82) 李仁榮 소장의 『殿策精粹』에는 “嘉靖丁未歲仲秋下澣慶州京邸開印”이라는 印記가 붙어 있다고 한다. 이 판본은 1547년(명종 2)에 開刊되었다.

83) 李仁榮(寶蓮閣) 권5 ; 金驥孫 等選, 國立中央圖書館, 『東國壯元策』, 1979 影印.

84) 筆者所藏의 木活字本이다. 羅世纘의 『崇節義』는 중종 20년(을유, 1525)의 庭試 初試에서 으뜸으로 뽑힌 글이고, 또 『抑戒』는 중종 33년(무술, 1538)의 擢英試에서 으뜸으로 뽑힌 글이다. 심경호(1993), 130~153면 ; 심경호(2002).

重試對策을 卷末에 再收錄했다.

조선 후기에는 과거 답안을 모은 수많은 책들이 편찬되었다. 다만, 인쇄되어 유통된 예는 상당히 적다. 17세기 초 失名氏가 책문을 엮은 『執策』(美國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East Asian Library) 1책(52장)은 효종·현종 연간 급제자들이 文科殿試의 科場에서 제출한 40여 편의 대책문을 초록해 두었다. 그리고 앞서 보았던 『策文準的』은 대책문의 작성법을 설명한 희귀한 예이다. 그러나 이 두 책은 모두 간행되지 않았다.⁸⁷⁾

정조 연간에는 科文 교본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편찬했다. 정조 때 규장각의 초계문신들의 제술을 모아 엮은 『奎華名選』과 ⁸⁸⁾과제시와 응제 시권을 분류하여 『臨軒功令』을 편찬하게 했다.⁸⁹⁾ 정조 시대에는 문신의 제술과 성균관 유생의 제술과 관련해서 다음 책들을 엮었다.⁹⁰⁾

- ① 『臨軒功令』: 국왕이 주관한 응제를 비롯하여 예조와 성균관 및 각도의 都會에서 지어진 科文 중 우수한 것을 연대순으로 엮은 책이다. 처음에는 예조에서 편찬하다가 뒤에는 규장각에서 담당했다(『弘齋全書』 卷184 羣書標記6 命撰2『臨軒功令』). 정조 즉위년(1776)부터 고종 11년(1874)까지 74책의 필사본이 『臨軒題叢』과의 합본으로 규장각에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도 4책본이 소장되어 있다.

87) 최석(2009), 381~404면.

88) 1793년(정조 17) 奎章閣에 명하여 抄啓文臣 製述을 엮어, 이듬해 2월 17일 校書館이 『奎華名選』을 인쇄하여 올렸다.

89) 이를테면 정조는 재위 13년(1789, 기유) 3월 28일(을유) 응제 시권을 고하하고, 그 우수 답안을 임헌공령 에 신게 했다. 당시 『長安市上酒家眠』를 詩題로 삼아 七言百韻古詩를 시험 보였는데, 韓晩裕가 居首, 우부승지 李書九와 동부승지 申翬가 次次였다. 정조는 시권을 內閣에 보내 『臨軒功令』과 『銀臺詩帖』에 수록하게 했다.

90) 沈慶昊(2020), 9~65면.

- ② 『臨軒題叢』: 제술 시험의 試題를 문체별로 기록하고 각 제목 아래에 언제 무슨 시험에 쓰인 것인지를 밝힌 책이다. 현재 1800년·1811년(1책), 1827년·1828년(2책), 1855년(4책) 치러진 제술에 관한 기록을 적은 3책의 낙질 필사본이 『臨軒功令』과의 합본으로 규장각에 있다. 4책의 『臨軒題叢』과 74책의 『臨軒功令』의 合本으로 筆寫本이며 『臨軒題叢』 제3책이 落帙이다. 筆體로 보아 歷代의 여러 사람이 이어 쓴 것으로 보인다. 『臨軒題叢』은 제1책이 1800년·1811년, 제2책은 1827년·1828년, 제4책은 1855년(哲宗 6)의 응제문 제목을 문체별로 수록했다.⁹¹⁾ 『임헌공령』은 정조 원년인 1777년의 증광문과초시 과문부터 수록했다.⁹²⁾
- ③ 『育英姓彙』: 徐有槎가 왕명에 의해 응제 시험의 방목을 성씨별로 분류하고, 貫鄉·世·派 및 科種 등을 갖추어 기록했다. 초본은 모두 110개 성씨, 총 29권으로 정조 즉위년(1776)부터 기록되었다. 초본은 정조 17년(1793) 12월 20일 완성되었는데, 『羣書標記』에는 본문의 기록 범위를 병신년(1776)부터 을묘년(1795)까지라 하여 기록의 하

91) 『臨軒題叢』 1책: 賦·表·詔·銘·頌·箴·律賦·詩·古詩·律詩·絕句·啓·序·排律·策·制·論·義·說·贊·奏文·答綸의 順으로 試題目을 차례로 신고 각 제목 아래에 언제 무슨 試驗의 題目인지 밝혔다. 2책: 賦·表·書·詔·銘·頌·詩·古詩·律詩·排律·絕句·序·論·判·跋·上疏·草記·婚書·上樞文 順으로 試題를 실었다. 3책: 落帙. 4책: 賦·詩·表·疑 順으로 試題를 차례로 실었다.

92) 『臨軒功令』 1책: 1777년 2월 增廣文科初試의 一所에서 幼學鄭斗榮이 지은 執策을 비롯하여 慶尙道, 全羅道, 忠清道, 平安道 등의 增廣文科策 16권. 2책 壬寅年李庚運 등 殿策, 3책 賦, 4책 表, 5책 頌, 6·7책 執策, 8책 賦, 9책 表, 10책 科體詩, 11책 執策, 12책 殿策, 13책 詩, 14책 執策, 15책 擬, 16책 賦, 17책 詩義, 18·19책 詩, 20책 疑, 21책 問, 22·23책 經義, 24책 賦, 25책 詩, 26·27책 問, 28책 銘, 29책 問, 30책 論, 31책 七言詩, 32·33·34책 賦, 35책 表箋, 36책 銘, 37책 論, 38책 排律, 39책 賦, 40·41책 表冊, 42책 論, 43책 銘, 44책 經義, 45책 論, 46책 銘, 47책 經義, 48책 表, 49책 銘, 50책 論, 51책 銘, 52책 名, 53책 表, 54책 經義, 55책 銘, 56책 詩, 57책 問, 58책 表, 59책 問, 60·61책 經義, 62책 策, 63책 詩, 64책 論, 65책 賦, 66책 疑, 67책 表, 68책 問, 69·70책 詩, 71책 論, 72책 賦, 73책 表, 74책 問·經義 등.

한을 늘렸고 또 검색을 위한 韻表 4권과 응제 사실 1권이 추가 해서 34권이 되었다. 현전본은 확인되지 않는다.

- ④ 『御考恩賜節目』: 정조가 재위 18년(1794) 3월 1일 성균관 응제시험의 御考를 받은 자들에 대해 특별히 御考의 회수만큼 문과 회시에 直赴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하여, 내각에서 절차를 정한 절목이다.
- ⑤ 『太學應製御考案』: 성균관의 응제 때 어고를 내리는 방식을 규정한 것인 듯하다. 李晩秀의 『履園遺稿』 卷6 「賜笏集 節目 齋薦節目」에 “『太學應製御考』를 기준으로 수석·2등·3등의 석차를 매긴다.”라고 했다. 현전본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조선 후기에는 과거시험 참고서용 유서인 ‘策括’이 다수 편집되었고, 일부는 간행되었다. 刊行本 『經書類抄』·『經史集說』·『玉纂』, 筆寫本 『性理說集錄』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권위 있는 서적과 그 학설을 직접 또는 2차 인용하고 편찬자의 私見을 첨부하지 않았다. 조선의 類書 편찬 전통을 계승해서 ‘門’의 항목을 두고, ‘用人’ 등 試題로 빈출한 주제를 수록했다. 이들 서적은 편찬자와 편찬 시기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저자의식에 강한 바탕을 두기보다는 상업적 또는 개인적 필요에 의해 제작·유통되었다. 책괄은 類說·科詩 등 학문적·문학적 영역의 성립과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⁹³⁾

5. 結語

조선시대의 학자들은 진정한 학문과 科擧之學을 판연히 둘로 나누어 보고자 했다. 이를테면 김원행은 學問이란 民生日用事라고 정의하면서 明天

93) 沈揆植(2019), 297~335면.

理·正人心의 성리학적 학습방법을 제시하는 한편,⁹⁴⁾ 다른 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俗學의 가장 아래에 科擧之學을 놓고, 제일층에 詞章之學을 두었으며, 제일층에 訓詁之學을 두었다. 서원의 主講들은 幼生의 ‘奪志’를 우려하여 科擧之學을 배격하고, 講會를 통해 正學을 진작시키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老論學脈을 이룬 石室書院의 경우도 講會의 주관자도 없고 대부분의 識字者는 科業의 유혹 때문에 도학에 뜻을 두지 못할 정도였다.⁹⁵⁾

조선의 조정은 科題에 通鑑類 등 歷史故事와 經書 및 程朱經解를 제시하여 幼學[虛通·業儒 포함]과 儒生들의 공부를 유도함으로써 讀書層의 학술 사상, 현실 인식, 역사 해석, 문학 내용을 통일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조정이 이상으로 삼는 正學과 入仕의 수단인 科擧之學은 지향점이 달랐다. 科擧는 시험의 명목이 너무 번다하고 과문의 체제가 복잡했다. 조선의 科試는 古文·駢文·韻文의 여러 양식을 부과했으므로, 幼學과 儒生은 그것들을 두루 익히기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연습을 해야 했다. 幼學과 儒生은 다양한 科目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문을 연습할 때 受驗用 編書들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試券의 製述은 일률적인 답안으로 흐르고는 했다. 조선은 상당히 많은 한문 서적을 편찬하고 간행했다. 조선후기에는 喪葬祭儀書, 黨論書와 함께 과거 수험용의 서적들이 많이 출현했다. 종래 類書로 분류되던 편찬물 가운데는 策括類 등 수험대비용 어휘집도 상당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⁹⁶⁾

94) 金元行, 『溪湖先生言行錄』, 『溪湖全書』, 여강출판사, 1986. “先生曰: 學問非別般事, 卽民生日用事. 學而迂闊, 不可適用者, 非眞箇學也. 上古學者, 知此之實. 故天理明而人心正, 羣倫攸叙, 治日常多. 後世則爲學者少, 學亦名不究實, 鮮能曉當務, 故治日常少. 是豈學問之本意哉? 往古及今, 明天理正人心, 卽治世之本.”

95) 金元行, 『答李汝封採』, 『溪湖集』 卷5, 韓國文集叢刊 220, 民族文化推進會, 1998. “此間講會, 正爲主講無人, 不足以聳動多士, 來者絕少. 亦緣鄉里中, 多汨窮餓, 不能讀書. 或能粗業文字, 又皆爲科擧所誘, 無有能回頭轉腦, 肯有志於此學者, 良可慙悼!”

96) 중국에서도 과거수험용의 實用書에 대한 평가가 낮았다. 『四庫全書總目提要』에 ‘科擧

조선 조정은 1876년에 開港을 단행하고, 1894년에 과거제도를 폐지하며, 1902년(광무 6) 10월 10일 ‘新式 度量衡規制’를 선포함으로써,⁹⁷⁾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태세를 갖추었다.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조선은 각 지역의 서원을 정리하며 鄕校와 養士齋 등 지방 관학 기관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했다. 개항 후에는 ‘鄕貢保擧法’을 통해 지역 인재를 선발하고 ‘鄕學條例’를 통해 향촌의 리·면·군 단위로 학교를 설립하여 이를 계열화하고자 했으며, ‘新設學校節目’을 반포해서 학교 교육과 인재 선발을 일체화하고자 했다.⁹⁸⁾ 하지만 조선은 일제의 침략을 당하고 말아, 스스로 教育法과 人選法을 완전히 개혁할 수가 없었다. 근대의 조선은 ‘東道西器論과 傳統繼承論’, ‘啓蒙主義와 脫傳統的 傳統改造論’, ‘文化主義와 鄕土的·民藝的 傳統觀’, ‘東洋主義와 古典復興論’의 여러 계보가 뒤얽혀 있었다.⁹⁹⁾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종래의 과거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일본 침략기의 대표적 학자였던 鄭萬朝만은 일제의 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학교는 바로 과거법을 개정한 것이지 과거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¹⁰⁰⁾ 일제강점기 교육제도와 人選法을 옹호하기 위해 과거제도를 조금 평가해 준 것이다.

文獻’은 180종 뿐이고 그나마 四庫全書에는 40종만 수록했다고 한다. 이러한 책들 대다수가 實用書들이었기 때문이다. 張祝平(1995), 107면.

97) 『官報』 號外, 광무 6년 10월 21일자, 필자 소장.

98) 김태근(2019), 77~98면.

99) 박계리(2014). 이 책의 II장 「근대기 전통의 인식체제와 배경」에서 배열한 항목이다.

100) 鄭萬朝, 『科試及科文』, 서울大學校 奎章閣 가람文庫藏. “夫科擧之弊, 一則科試之名目太繁, 一則科文之體裁太拘. 是以選難其精, 才有所局, 又況考試者, 未必皆有藻鑑有公心乎? 且使不繁不拘, 考試者得其人, 不以先之教育不可也. 教育不明, 徒尙科擧, 是不治其本而治其末也. 所以廢科擧而興學校, 以復古昔家塾黨庠州序國學之制, 而迂儒曲士, 尙有以科擧之廢爲深憾, 何其固也? 今之學校, 亦科擧之制也. 嚮者, 文武科之居甲者, 直授六品職, 生進科之被選者, 亦隨才補蔭官. 今大學卒業者, 直無礙爲高等官, 雖中學高等卒業, 皆有就職之望. 嚮者, 占大小科者, 必賜紅白牌, 今學校卒業, 皆有證書褒狀之授, 此皆何異乎科擧也? 故余則曰: “今之學校, 卽科擧法之改良者也, 非廢科擧也.”

조선이 과거제도를 폐지한 것은 1894년으로, 그것은 清朝가 新政改革의 일환으로 1905년(光緒 31)에 과거를 폐지한 것¹⁰¹⁾보다 시기가 이르다. 청나라에서는 과거가 폐지된 이후 四民의 상층을 이루었던 ‘士’가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났으며, 향촌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존재하던 士인들의 위축으로 인해 농촌이 더욱 피폐해졌다. 이 점에서 과거제도는 중국의 전통시대와 근대를 나누는 중요한 분절점의 하나로서 의식되고 있다. 근대로 갓 진입한 중국에서 과거는 纏足이나 辮髮처럼 ‘封建性’의 표상으로서 혐오되었다가, 과거를 대체한 새로운 학교제도나 관료 임용제도가 한동안 정착하지 못하자 과거제도를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일도 있었다.¹⁰²⁾ 조선의 경우, 과거가 일찍 폐지됨으로써, 지방에서 科業을 닦던 많은 사람들이 失職의 상태가 되었다. 일부는 지방의 學塾에서 塾長으로서 활동하여 근대 이전의 사유체계를 현대에 전수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 실상과 득실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고문헌】

- 國史編纂委員會, 『朝鮮王朝實錄』 48冊, 探求堂, 1981 影印.
 鄭麟趾 等 奉命撰, 『高麗史』, 影印本, 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 1950 ; 韓國學文獻研究所, 1983.
 盧思愼·徐居正外編, 『(影印標點)東文選』, 民族文化推進黨, 1999.
 正祖, 『弘齋全書』, 韓國文集叢刊 262~267, 民族文化推進黨, 2001; 『國譯 弘齋全書』,

101) Wolfgang Franke, The reform and abolition of the traditional Chinese examination syste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2; 何懷宏, 『選舉社會及其終結』, 北京:三聯書店, 1998; 張亞群, 『科舉革廢與近代中國高等教育的轉型』, 武漢:華中師範大學出版社, 2005; 陳興德, 『二十世紀科舉觀之變遷』, 武漢:華中師範大學出版社, 2008.

102) 하원수, 『科舉制度的 多重性:傳統的 近代的 解釋과 관련한 一試論』, 『史林』 39, 수선사학회, 2011, pp.55~85.

- 民族文化推進會, 1998~2000.
- 『承政院日記』, 韓國古典翻譯院 提供 DB.
- 『內閣日曆』, 서울大學校 奎章閣韓國學研究院 提供 DB.
-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古典刊行會 影印, 1958; 『(국역분류)오주연문장전산고』, 민족문화추진회, 1967~1982; 『分類五洲衍文長箋散稿』, 난해원전고감정리사업 인터넷자료, 민족문화추진회, 2005.
- 金驥孫 等選, 『東國壯元策』, 國立中央圖書館, 1979 影印.
- 正祖 命撰, 『奎華名選』, 活字本(再鑄韓構字), 芸閣, 癸丑(1793), 高麗大學校圖書館所藏.
- 『聖宋名賢五百家播芳大全文粹』, 東京:國立公文書館 內閣文庫所藏.
- 『殿策精粹』 2卷 2冊, 서울大學校 奎章閣所藏.
- 『策文準』, 國立中央圖書館所藏.
- 『臨軒題叢』·『臨軒功令』, 國立中央圖書館所藏.
- 『東國論選』, 木活字本, 筆者所藏.
- 『官報』 號外, 光武 6年 10月 21日, 筆者所藏.
- 『紹修書院謄錄』, 朝鮮史料叢刊 17, 朝鮮史編修會, 1937 影印; 『(國譯)紹修書院』, 동양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영주시, 2005.
- 嶺南文獻研究所 編輯, 『紹修書院誌』, 영주:紹修書院, 2007.
- 鄭萬朝, 『科試及科文』, 서울大學校 奎章閣 가람文庫所藏.
- 金得臣, 『終南叢志』, 趙鍾業編, 『韓國詩話叢編』 3. 東西文化院, 1989 影印.
- 金錫胄, 『息庵遺稿』, 韓國文集叢刊 145, 民族文化推進會, 1995.
- 金元行, 『溪湖先生言行錄』, 『溪湖全書』, 여강출판사, 1986.
- 金元行, 『溪湖集』, 韓國文集叢刊 220, 民族文化推進會, 1998.
- 金昌協, 『農巖集』 I II, 韓國文集叢刊 161~162, 民族文化推進會, 1996.
- 金幹, 『厚齋先生集』 I II, 韓國文集叢刊 156, 民族文化推進會, 1995.
- 金誠一, 『鶴峯集』, 韓國文集叢刊 48, 民族文化推進會, 1988.
- 朴世采, 『南溪先生朴文純公文集』 I~V, 韓國文集叢刊 138~142. 民族文化推進會, 1994.
- 朴承任, 『嘯臯集』, 韓國文集叢刊 36, 民族文化推進會, 1988.
- 朴趾源, 『燕巖集』, 韓國文集叢刊 252, 民族文化推進會, 2000.
- 成大中, 『青城雜記』, 李丙燾舊藏 筆寫本.
- 成渾, 『牛溪集』, 韓國文集叢刊 43, 民族文化推進會, 1989.

- 申最, 『春沼子集』, 韓國文集叢刊續 34, 民族文化推進黨, 2007.
- 梁誠之, 『訥齋集』, 韓國文集叢刊 19, 民族文化推進黨, 1988.
- 俞漢雋, 『自著』, 韓國文集叢刊 249, 民族文化推進黨, 2000.
- 李德懋, 『雅亭遺稿』 1~11, 『靑莊館全書』, 韓國文集叢刊 258, 民族文化推進黨, 2000.
- 李德懋, 『靑莊館全書』 I II III, 韓國文集叢刊 257~259, 民族文化推進黨, 2000.
- 李晚秀, 『履園遺稿』, 韓國文集叢刊 268, 民族文化推進黨, 2001.
- 李珥, 『栗谷全書』 I II, 韓國文集叢刊 44~45, 民族文化推進黨, 1989.
- 李瀾, 『星湖全書』, 驪江出版社 1987 影印.
- 李瀾, 『星湖僊說類選』, 朝鮮古書刊行會, 1914 ; 『國譯 星湖僊說』, 民族文化推進黨, 1976~1978.
- 李滉, 『退溪集』 I II III, 韓國文集叢刊 29~31, 民族文化推進黨, 1988.
- 鄭百昌, 『玄谷集』, 韓國文集叢刊 93, 民族文化推進黨, 1988.
- 丁若鏞, 『牧民心書』 卷1~14, 『定本與猶堂全書』, 茶山學術文化財團, 2012.
- 趙顯期, 『一峯集』, 韓國文集叢刊續 42, 民族文化推進黨, 2007.
- 崔是翁, 『東岡先生遺稿』, 韓國文集叢刊續 46, 民族文化推進黨, 2007.
- 黃德吉, 『下廬集』 韓國文集總刊 260, 民族文化推進黨, 2000.
- 紀昀等, 『四庫全書總目提要』(1~6),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68 ; 『欽定四庫全書總目』, 中華書局, 1981 ; 紀昀等 奉勅撰, 『四庫全書總目提要』, 四庫全書總目提要編委會, 海南出版社, 1999.
- 『明狀元圖考』, 日本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所藏.
- 姜碩中(1999), 『韓國 科賦의 展開樣相 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姜信沆(2000), 『韓國의 韻書』, 國語學叢書 2, 國語學會, 太學社.
- 金武林(1999), 『洪武正韻譯訓 研究』, 월인.
- 김경용(2004), 『조선시대 과거제도 시행의 법규와 실제』, 『교육법학연구』162-2, 대한교육법학회.
- 김경용(2010), 『조선중기 과거제도 정비 과정과 그 교육적 의의』, 『교육사학연구』 20-1, 교육사학연구회, 1~26면.
- 김경용(2012), 『역주 과거사목 연구』, 『교육사학연구』 22-2, 교육사학회, 149~174면.
- 金東錫(2013), 『朝鮮時代 試券 研究』,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김두현(2016), 『조선시대 울산·연양 지역 과거 합격자 배출 양상 및 과거 시험의 개방』

- 성- 옥구·임피 지역 및 함양·안의 지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제26권 제2호, 교육사학연구, 1~53면.
- 金紫雲(2014), 「16세기 소수서원 교육의 성격」, 『유교사상문화연구』 58, 한국유교학회, 331~358면.
- 김태근(2019), 「개항 후 지방 전통 교육 체제의 변화 연구」, 『東洋學』 74,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 77~98면.
- 박계리(2014), 『모더니티와 전통론: 혼돈의 시대, 미술을 통한 정체성 읽기』, 이화연구 총서 21, 혜안.
- 朴在慶(2014), 「조선시대 策文연구」, 서울大學校 國語國文學科 博士學位論文.
- 朴在慶(2013), 「策文으로 본 朝鮮時代 科擧史의 裏面」, 『大東漢文學』 38, 大東漢文學會, 137~165면.
- 박종배(2009), 「학규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서원 강회」, 『교육사학연구』 19-2, 교육사학회, 59~84면.
- 백진우, 「執筆 解題」,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海外韓國學센터 提供.
- 송찬섭(2014), 「1862년 三政策問에 따른 京外對策 검토」, 『史林』 28, 首善史學會, 157~193면.
- 沈慶昊(1993), 「木活字本 東國論選에 관하여」, 『季刊書誌學報』 11, 韓國書誌學會, 130~153면.
- 沈慶昊(2002), 『國文學研究과 文獻學』, 太學社.
- 沈慶昊(2009), 「續文範 解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문헌총서 10 續文範卷之二』, 계명대학교 출판부, 156~163면.
- 沈慶昊(2009), 「朝鮮 선비의 文字生活과 知的 交流」, 『國學研究』 14, 韓國國學振興院, 413~449면.
- 沈慶昊(2012), 『韓國漢文基礎學史』, 太學社.
- 沈慶昊(2015), 「동아시아에서의 ‘千字文’ 類 및 ‘蒙求’ 類 流行과 漢字漢文 基礎教育」, 『漢字漢文教育』 36,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 7~45면.
- 沈慶昊(2016), 「正祖의 文體政策과 製述賦課」, 『震檀學報』 127, 震檀學會, 131~157면.
- 沈慶昊(2020), 「韓國漢文學의 駢文 活用 文體와 그 歷史文化上 機能」, 『韓國漢文學研究』 77, 한국한문학회, 225~300면.
- 沈慶昊(2020), 「科試, 泮製 및 應製 資料의 遍在 狀況」, 『東洋古典研究』 80, 東洋古典學會, 9~65면.
- 沈揆植(2019), 「朝鮮 ‘策括’ 類 類書에 관한 一考」, 『書誌學研究』 80, 韓國書誌學會, 29

7~335면.

- 심재권(2015), 「조선조 과거시험과목인 책문의 내용 및 주제 분석」, 『韓國行政史學誌』 37, 韓國行政史學會, 183~208면.
- 안세현(2011), 「조선중기 文風의 변화와 科文」, 대동문화연구 7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25~254면.
- 안소연(2019), 「조선시대 經世觀의 변화 연구 : 策問·對策 분석을 중심으로」, 國民大學校 國史學科 碩士論文.
- 윤병태(1997), 「『御試策』과 朝鮮前期의 小型活字印本—反『元刊銅活字本』考—」, 『古印刷文化』 4, 淸州古印刷博物館.
- 윤선영(2018), 「조선 시대 科擧 四書疑 試文 一考」, 『漢文學論集』 50, 槿域漢文學會, 245~278면.
- 윤선영(2019), 「조선 후기 과거(科擧) 생원시(生員試) 문답의 한계점 고찰 - 사서의(四書疑) 과목을 중심으로 -」, 『Journal of Korean Culture』 45,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The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395~444면.
- 윤선영(2020), 「조선시대 科擧 四書疑 과목에 보이는 尊朱子의 양상 고찰」, 『東亞漢學研究』 14, 高麗大學校 漢字漢文研究所(Korea University Chinese Rentier Institute), 501~537면.
- 윤희면(2005), 「서원교육의 전개와 교육효과」,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371~383면.
- 李東歡(1993), 「『科擧事目』 및 『詳定科擧規式』 解題」, 『書誌學報』 9, 韓國書誌學會, 143~145면.
- 이병주(2014), 「金錫胄의 科文學習 研究」, 『大東漢文學』 40, 大東漢文學會, 145~181면.
- 李炳赫(2003), 「韓國漢文學의 探求」, 國學資料院.
- 이상욱(2015), 「조선후기 對策 형식의 역사적 추이」, 『洙上古典研究』 44, 洙上古典研究會, 311~348면.
- 이상욱(2017), 「조선 후기 科表의 문체적 특징과 글쓰기-科表작성을 위한 참고서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53, 대동한문학회, 159~193면.
- 이용백(1962), 「甲午更張 以前의 作文教育」, 『國語教育』 4, 韓國語教育學會(舊 韓國國語教育研究學會), 1~73면.
- 李仁榮(1968), 『淸芬室書日』, 寶蓮閣.
- 이장희(2003), 「三韻通考의 底本에 대하여」, 『語文學』 80, 韓國語文學會, 105~122면.

- 이혜준 외(2014), 『서원 생활기물 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任完嫻(2009), 『朝鮮前期策文과 士의 世界認識- 殿策精粹를 중심으로』, 『漢文學報』 20, 우리漢文學會, 355~382면.
- 任完嫻(2014), 『조선후기 科擧에 대한 心理의 一面 - 科夢을 중심으로』, 『大東漢文學』 40, 大東漢文學會, 183~228면.
- 장유승(2013), 『科詩의 형식과 문체적 특징』, 『大東漢文學』 38, 大東漢文學會, 5~45면.
- 정경일(2002), 『한국 운서의 이해』, 아카넷.
- 정경주(2013), 『科文表箋의 형식과 문체의 특성』, 『대동한문학』 39, 대동한문화회, 83~125면.
- 丁淳睦(1979), 『韓國書院教育制度研究』,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정순우(2013), 『서당의 사회사』, 태학사.
- 천혜봉(1998), 『朝鮮朝의 乙亥小字體木活字本 『御試策』』, 『書誌學研究』 15, 書誌學會, 23~50면.
- 최식(2009), 『策文의 특징과 글쓰기 - 『策文準의』을 중심으로 -』, 『동방학회』 39, 동방한문학회, 381~404면.
- 崔珍玉(1993), 『朝鮮時代 生員進士 研究 - 司馬榜目の 分析』,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韓國史專攻 博士學位論文.
- 하원수(2011), 『科擧制度의 多重性:傳統의 近代의 解釋과 관련한 一試論』, 『史林』 39, 수선사학회, 55~85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015), 『試券: 국가경영의 지혜를 듣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한영우(2013), 『科擧, 출세의 사다리』 1~4, 지식산업사.
- 許興植(1981), 『高麗科擧制度史研究』, 一潮閣.
- 鄧定人(1929), 『中國攷試制度研究』, 上海:民智書局.
- 沈津(2006), 『『新箋決科古今源流至論』의 版本鑒定』, 大連圖書館.
- 岳振國(2007), 『『宋名賢五百家播芳大全文粹』版本流傳考述』, 『圖書管理與實踐』.
- 劉海峰(2005), 『科擧學導論』, 武漢: 華中師範大學出版社.
- 何懷宏(1998), 『選舉社會及其終結』, 北京: 三聯書店.
- 張亞群(2005), 『科擧革廢與近代中國高等教育的轉型』, 武漢: 華中師範大學出版社.
- 陳興德(2008), 『二十世紀科擧觀之變遷』, 武漢: 華中師範大學出版社.
- 申万里(2018), 『元代科擧新探』, 北京: 人民出版社.

- 張祝平(1995), 『四庫全書與科學文獻』, 『貴州社會科學』 1995-3.
- 杜信孚(1983), 『明代版刻綜錄』 8冊, 江蘇江蘇廣陵古籍刻印社 鉛印本.
- 宮紀子(2006), 『モンゴル時代の出版文化』, 名古屋大學出版會.
- 末松保和(1941), 『麗末鮮初に於ける對明關係』, 京城帝國大學文學會論纂 第十輯 『史學論叢』 第二, 岩波書店.
- 藤本幸夫(2006), 『日本現存朝鮮本研究-集部』, 京都大學出版會.
- 三澤成博(1994), 『音引き『三重韻』としての『貞享三年版』について』, 『和洋女子大學紀要』 34, 25~36면.
- 小倉進平(1935), 『三韻通考及び増補三韻通考について』, 『藤江博士論文集』.
- 奥村三雄(1973), 『聚分韻略の研究』, 風間書房.
- Wolfgang Franke(1972), *The reform and abolition of the traditional Chinese examination syste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韓國古典翻譯院 韓國古典綜合DB (<http://db.itkc.or.kr>)
- 國史編纂委員會 韓國歷史情報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 國立中央圖書館 統合檢索 디브러리 (<http://www.nl.go.kr/nl/index.jsp>)
-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資料센터 (<http://www.kostma.net/>)
- 서울大學校 奎章閣韓國學研究院 (<http://kyujanggak.snu.ac.kr/>)
-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海外韓國學資料센터(<https://riks.korea.ac.kr/kostma/>)

Civil Service Examination and Literary Life in the Joseon Period

Sim, Kyungho | Emeritus Professor, Department of Classical Chinese, Korea University

In the pre-modern Korea, Wen (文) and Xue (學) constantly have sought for the new methodologies and contents keeping close relationship with the political power. Civil service examination which was the method of selecting human resources, performance review and royal lecture which was the method of managing human resources, was the most important system for realizing the political pow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essence of civil service examination system in order to understand the aspects of the development of Wen (文) and Xue (學) and their way of keeping relationship with the political power. The government was suggesting the ideology and the logic required through the styles and titles imposed in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s.

Goryeo and Joseon government cultivated the literati class well versed with examination poetry and prose by authorizing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as a shortcut way to the selection of government official. Thus, it can be said that the dominant literary style of civil service examination that have changed according to the time not only defined the literary style and scholarship of each period, but sometimes even restricted them. In some respect, it also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literature. This paper surveys the subjects and literary styles of civil service examination, the formation of the cultivation of the way of thinking and literary attainments, and the

rhetorical rules and publication in the Joseon period.

[Keywords] civil service examination, literary styles of civil service examination, Wen (文) and Xue (學), political power, way of thinking, literary life, rhetorical rules, publication.

본 논문은 2021년 3월 8일 투고되어 2021년 3월 15일 심사를 완료하여
2021년 3월 22일에 게재를 확정하였음